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전 병 준]

목 차

1. 검토경과	1
2.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1
가. 총괄	1
나. 세입예산	2
다. 세출예산(기능별)	3
라. 세출예산(조직별 일반회계)	4
마. 세출예산(특별회계)	5
바. 세출예산(성질별)	6
3. 부서별 검토의견	
□ 도민체전기획단	7
□ 안전총괄과	9
□ 산림과	15
□ 환경과	23
□ 건설교통과	31
□ 도시건축과	41
□ 농업축산과	45
□ 미래농업과	53
□ 농업소득과	58
□ 행복농촌과	64
□ 수도사업소	66
□ 체육시설사업소	78
□ 거창골프장사업소	81
□ 거창사건사업소	8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8. 1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6. 8. 18.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가. 총 괄 - (예산안 P9)

(단위: 천 원)				
회 계 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907,765,574	852,388,837	55,376,737	6.50
일반회계	838,954,962	790,178,883	48,776,079	6.17
특별회계	68,810,612	62,209,954	6,600,658	10.61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3억 7,673만 7천 원이 증액(6.50%)된 9,077억 6,55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 일반회계는 8,389억 5,49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7억 7,607만 9천원이 증액(6.17%) 되었으며,
 - ▶ 특별회계는 688억 1,06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65만 8천원이 증액(10.61%) 되었음.

나. 세입예산(일반 + 기타특별회계) - (예산안 P10)

(단위: 천 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868,410,915	811,809,302	56,601,613	6.97
지 방 세 수 입		41,778,799	41,778,799	0	0.00
	보 통 세	41,088,721	41,088,721	0	0.00
	지 난 연 도 수 입	690,078	690,078	0	0.00
세 외 수 입		35,257,934	35,067,910	190,024	0.54
	경상적세외수입	23,075,705	23,075,705	0	0.00
	재 산 임 대 수 입	449,452	449,452	0	0.00
	사 용 료 수 입	4,143,360	4,143,360	0	0.00
	수 수 료 수 입	2,967,000	2,967,000	0	0.00
	사 업 수 입	10,797,605	10,797,605	0	0.00
	징수교부금수입	910,746	910,746	0	0.00
	이 자 수 입	3,807,542	3,807,542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1,422,819	11,232,795	190,024	1.69
	재 산 매 각 수 입	132,000	132,000	0	0.00
	자치단체간부담금	25,415	25,415	0	0.00
	보조금반환수입	2,500,000	2,500,000	0	0.00
	기 타 수 입	8,765,404	8,575,380	190,024	2.22
	행정제재·부과금	559,410	559,410	0	0.00
	지 난 연 도 수 입	200,000	200,000	0	0.00
지 방 교 부 세 등		352,886,000	327,438,000	25,448,000	7.77
조 정 교 부 금 등		32,510,615	30,283,815	2,226,800	7.35
보 조 금		293,864,938	269,524,767	24,340,171	9.0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2,112,629	107,716,011	4,396,618	4.08
	잉 여 금	39,303,919	47,178,332	△7,874,413	△16.69
	전 년 도 이 월 금	9,091,852	5,515,000	3,576,852	64.86
	융자금원금수입	2,500,000	1,500,000	1,000,000	66.67
	보조금등반환금	1,781,751	0	1,781,751	순증
	전 입 금	59,435,107	53,522,679	5,912,428	11.05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39,354,659천원)

다. 세출예산(기능별) - (예산안 P15)

(단위: 천 원)

부 서 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868,410,915	811,809,302	56,601,613	6.97
일반공공행정	68,638,147	68,884,781	△246,634	△0.36
공공질서및안전	12,977,416	12,112,870	864,546	7.14
교육	9,287,659	8,669,796	617,863	7.13
문화및관광	44,989,780	41,486,382	3,503,398	8.44
환경	76,731,751	71,311,708	5,420,043	7.60
사회복지	190,788,031	189,080,650	1,707,381	0.90
보건	11,211,246	11,437,703	△226,457	△1.98
농림해양수산	184,324,811	178,275,332	6,049,479	3.3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0,926,078	24,964,808	25,961,270	103.99
교통및물류	25,111,915	22,979,586	2,132,329	9.28
국토및지역개발	92,961,775	75,846,288	17,115,487	22.57
예비비	16,406,049	22,871,612	△6,465,563	△28.27
기타	84,056,257	83,887,786	168,471	0.20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39,354,659천원)

-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2026년 당초 예산액보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서 103.9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예비비는 28.27% 감소하였음.

라. 세출예산(조직별 일반회계) - (예산안 P22)

(단위: 천 원)

부 서 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38,954,962	790,178,883	48,776,079	6.17
의회운영위원회	1,333,896	1,333,896	0	0.00
총 무 위 원 회	467,632,148	444,008,079	23,624,069	5.32
산업건설위원회	369,988,918	344,836,908	25,152,010	7.29
도민체전기획단	3,370,560	1,698,560	1,672,000	98.44
안 전 총 괄 과	13,651,766	12,780,114	871,652	6.82
산 림 과	33,558,536	31,727,831	1,830,705	5.77
환 경 과	41,371,147	35,396,107	5,975,040	16.88
건 설 교 통 과	66,698,715	59,176,957	7,521,758	12.71
도 시 건 축 과	26,905,534	22,024,245	4,881,289	22.16
농 업 축 산 과	29,390,668	27,814,980	1,575,688	5.66
미 래 농 업 과	29,074,955	28,617,046	457,909	1.60
농 업 소 득 과	48,043,982	46,381,140	1,662,842	3.59
행 복 농 촌 과	26,551,603	27,550,323	△998,720	△3.63
수 도 사 업 소	32,681,033	33,413,759	△732,726	△2.19
체육시설사업소	17,174,059	16,727,834	446,225	2.67
거창골프장사업소	49,249	49,250	△1	0.00
거창사건사업소	1,467,111	1,478,762	△11,651	△0.79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51억 5,201만 원이 증액(7.29%)된 3,699억 8,891만 8천원으로 편성됨.

마. 세출예산(특별회계) - (예산안 P9, P24)

(단위: 천 원)

회 계 명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68,810,612	62,209,954	6,600,658	0.97
총 무 위 원 회		19,806,602	12,960,556	6,846,046	430.92
산업건설위원회		49,004,010	49,249,398	△245,388	△0.50
공 기 업	소 계	39,354,659	40,579,535	△1,224,876	△3.02
	상수도사업	14,653,637	15,628,637	△975,000	△6.24
	하수도사업	21,417,581	21,905,362	△487,781	△2.23
	골프장사업	3,283,441	3,045,536	237,905	7.81
기 타	소 계	9,649,351	8,669,863	979,488	11.30
	수질개선 (환경과)	3,253,310	3,075,581	177,729	5.78
	주차장관리 (건설교통과)	583,957	583,957	0	0.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건설교통과)	843,384	816,430	26,954	3.30
	농업발전자금 (농업축산과)	4,968,700	4,193,895	774,805	18.47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9억 7,948만 8천원이 증액(11.30%)된 96억 4,93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2,487만 6천원이 감액(△3.02%)된 393억 5,46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바. 세출예산(성질별) - (예산안 P25)

(단위: 천 원)

부 서 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68,410,915	100.00	811,809,302	100.00	56,601,613	6.97
인건비	93,924,377	10.82	93,453,456	11.51	470,921	0.50
물건비	64,947,070	7.48	62,713,939	7.73	2,233,131	3.56
경상이전	343,412,288	39.54	323,031,685	39.79	20,380,603	6.31
자본지출	283,072,685	32.60	249,836,331	30.78	33,236,354	13.30
융자및출자	4,035,000	0.46	4,035,000	0.50	-	0.00
내부거래	48,294,069	5.56	41,584,661	5.12	6,709,408	16.13
예비비및기타	30,725,426	3.54	37,154,230	4.58	△6,428,804	△17.30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40,579,535천원)

-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률을 보면 내부거래가 16.13%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기타회계전출금 68억원 증액임
-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17.30% 감소 하였는데, 주요 요인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2억원 감소, 내부유보금 2억원 순감임.

3. 세출예산 부서별 검토의견

□ 도민체전기획단

<세출예산>(예산서 P257)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3,370,560	1,698,560	1,672,000	98.44

-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7,200만 원이 증액(98.44%)된 33억 7,056만 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 | | |
|--------------------|---|---------------|
| - 일반운영비 | ⇒ | 160,000천원 증 |
| - 종합운동장(주경기장) 시설개선 | ⇒ | 1,500,000천원 증 |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홍보물품 구입 (p257 ¹⁾ , p8 ²⁾)
내 용	○ [사업목적] 도민체전 홍보 ○ [사 업 비] 98,000천원(군 98,000) ▶<u>순증</u> ○ [사업내용] 홍보 물품 구입 ○ [증감사항] 신규편성
검토의견	☞ 홍보물품 구입 품목 및 단가 등 <u>98,000천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함.</u>

사 업 명	준비위원회 발대식 (p257, p9)
내 용	○ [사업목적] 범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 ○ [사 업 비] 22,000천원(군 22,000) ▶<u>순증</u> ○ [사업내용] 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 [증감사항] 신규편성
검토의견	☞ 준비위원회 발대식의 행사규모, 소요예산 22,000천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함.

사 업 명	업무협약식 (p257, p10)
내 용	○ [사업목적] 제66회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인지도 제고 ○ [사 업 비] 22,000천원(군 22,000) ▶순증 ○ [사업내용] 전국 유통망 보유 기업과의 홍보 업무협약식 개최 ○ [증감사항] 신규편성
검토의견	☞ <u>전국 유통망 보유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u>이며, 협약이 확정된 것인지, 단순 업무협약식 개최만으로 실제 도민체전 홍보효과를 어떻게 발생시킬 것인지 설명을 요함. ☞ <u>소요예산 22,000천원의 산출근거</u>는 무엇이며, 기업 측에서 부담하는 홍보비나 현물 제공은 없는지, 해당 기업의 전국 유통망을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몇 회, 어느 정도 규모의 홍보가 이루어지는지 등 <u>업무 협약 이후 기대효과</u>에 대한 설명을 요함.

□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예산서 P261)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13,651,766	12,780,114	871,652	6.82

○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8억 7,165만 2천 원이 증액(6.82%)된 136억 5,176만 6천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죽전지구 정밀안전점검	⇒	20,000천원	순증
- 안전협의체 운영	⇒	40,000천원	순증
- 물놀이 안전요원 인부임	⇒	16,056천원	증
-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	10,000천원	증
- 소규모 재해해소	⇒	310,000천원	증
- 야외무더위쉼터 정비사업	⇒	25,000천원	순증
- 폭염사고 예방(특교)	⇒	87,000천원	순증
-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정비	⇒	230,000천원	순증
- 도로조명시설 관리	⇒	173,660천원	증
- 입영지원금 지원	⇒	30,000천원	순증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안전점검 지원 (p261, p20)
내 용	○ [사업목적] 취약시설물의 잠재적 위험요인 사전 발견 ○ [사 업 비] 27,000천원(군 27,000) ▶ 19,000천원 증

	○ [사업내용]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수당, 죽전지구 정밀안전점검 ○ [증감사항] - 시설물, 축제·행사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수당 감 조정 - 죽전지구 정밀안전점검 실시 * <u>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결과 “미흡”</u>
검토의견	☞ 자문단 수당 감액은 단순히 집행잔액 조정인지, 필요한 안전점검 횟수나 전문가 참여를 줄인 것이라면 안전관리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u>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진단한 “미흡” 판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밀 안전점검 대상 및 범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함.</u>

사 업 명	안전협의체 운영 (p262, p22)
내 용	○ [사업목적] 안전협의체 운영 ○ [사 업 비] 40,000천원(국20,000, 도6,000, 군14,000) ▶순증 ○ [사업내용] 홍보물 구입, 안전예방 물품 구입, 협의체 참석수당 ○ [증감사항] 국·도비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국·도비 교부에 따라 신규 편성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총사업비 40,000천원 중 군비 14,000천원이 부담되는 만큼,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 및 사업비 산출근거가 적정한지, 특히 홍보물 및 안전예방 물품 구입이 일회성·소모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사 업 명	물놀이 안전관리 (p263, p24)
내 용	○ [사업목적]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 ○ [사 업 비] 380,211천원(군 380,211) ▶16,056증 ○ [사업내용]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및 안전장비 구입 ○ [증감사항] 물놀이 관리요원 추가채용(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

검토의견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인력의 보강 필요성은 인정되며,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물놀이 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 채용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액 군비로 380,211천원이 투입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인 만큼, 단순히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추가채용이라는 사유만으로 증액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추가채용 인원·근무기간·인건비 단가 및 배치 지역별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사 업 명	화재 처리 및 예방 지원 (p264, p26)
내 용	○ [사업목적] 취약계층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 [사 업 비] 34,911천원(군 34,911) ▶ 10,000천원 증 ○ [사업내용] 주택 화재잔재물 처리 지원 및 소방시설 지원 ○ [증감사항] 화재 발생시 폐기물 처리비 지원 현실화 및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
검토의견	☞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횟수가 2회 → 4회로 증가하였음.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데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이며 5,000천원이라는 사업비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함. ※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5.07.09]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다만,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 건물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건물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3. 건물의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	--

사 업 명	소규모 재해해소 (p263, p27)
내 용	○ [사업목적]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 [사 업 비] 1,115,418천원(특 129,500, 군 985,918) ▶ 310,000천원 증 ○ [사업내용] 침수 및 붕괴위험 등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 [증감사항] - 폭염 살수차 임대료 48,000천원 감 - 소규모 재해위험 지역 정비 등 358,000천원 증
검토의견	☞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및 산사태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이번 추경에는 가조 수월지구 등 4개 재해위험 사면정비사업에 278백만원, 2028년 신규지구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80백만원 등 총 35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다만,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각 지구별 재해위험도와 정비의 시급성,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금년도 집행 가능 여부 및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u>5개 지구를 이번 추경에 선정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며, 재해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인지, 해당 지역에 실제 붕괴·침수 위험이나 민원, 과거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추경 편성 후 금년도에 설계·착공·준공까지 가능한 사업인지 설명을 요함.</u> ☞ 특히 2028년 신규지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80백만원은 향후 실제 사업 추진과 재원 확보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용역의 필요성 및 기존 조사와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의 시급성이 확인되고, 사업비 산출 및 집행계획이 적정하다면 증액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와 향후 재원확보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 소규모 재해위험 지역 정비 등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358,000	0	358,000
가조 수월지구 재해위험 사면정비사업	30,000	0	30,000
남상 둔동지구 재해위험 세천정비사업	98,000	0	98,000
고제용초길 재해위험 사면정비사업	80,000	0	80,000
남상 춘전지구 재해위험 세천정비사업	70,000	0	70,000
2028년 신규지구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80,000	0	80,000

사 업 명	도로조명시설 관리 (p265, p33)
내 용	○ [사업목적] 효율적인 도로조명시설 관리로 주민 불편 해소 ○ [사 업 비] 224,150천원(군 224,150) ▶ 173,660증 ○ [사업내용] 외선공사 수수료 및 보안등 신설 ○ [증감사항] - 도로조명시설 외선공사 수수료 100건 증 - 도로조명 신설 70등 추가 - 가북 용산~우혜 구간 보안등 설치 20개소
검토의견	☞ 도로조명시설은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및 외선공사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당초 사업비 50,490천원에서 224,150천원으로 344% 증액한 가장 직접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외선공사 수수료 100건 및 보안등 70등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설치 대상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로조명 신설 추가분과 가북~용산 보안등 설치 단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보안등을 추가 설치할 경우 연간 전기료와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설명을 요함.

사 업 명	입영지원금 지원 (p266, p35)
내 용	○ [사업목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이행을 장려하기 위함 ○ [사 업 비] 32,500천원(군 32,500) ▶순증 ○ [사업내용] 입영지원금 지급 및 운영물품 구입 ○ [증감사항] 조례 시행에 따른 신규편성
검토의견	※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1.] 제3조(지급 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 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② 입영지원금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입영지원금의 지급 금액, 신청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산림과

<세출예산>(예산서 P271)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33,558,536	31,727,831	1,830,705	5.77

-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3,070만 5천원이 증액(5.77%)된 335억 5,853만 6천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거창화강석산업 실태조사 용역 ⇒ 50,000천원 **순증**
-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 ⇒ 15,000천원 **순증**
-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1개소) ⇒ △99,510천원
- 가공산업 육성(공모1개소) ⇒ △35,000천원
- 산불감시원 인건비 단가 인상 ⇒ 176,880천원 **순증**
- 산불진화차 대체 구입 ⇒ 40,000천원 **증**
- 산림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방제) ⇒ 1,000,000천원 **순증 [성립전]**
- 2026년 토석류 방호벽 설치사업 ⇒ 32,400천원 **순증 [성립전]**
- 산불예방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 80,000천원 **순증**
-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사업 ⇒ 16,800천원 **순증**
- 푸른거창 조성 지원 ⇒ 325,000천원 **증**
- 어인마을 다목적 소공원 조성공사 ⇒ 20,000천원 **순증**
- 감정평가 수수료 ⇒ 18,000천원 **순증**
- 산림레포츠파크 야외 화장실 설치 ⇒ 150,000천원 **순증**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거창화강석산업 실태조사 용역 (p271, p45)
내 용	○ [사업목적] 객관적인 산업현황과 원석 부존현황(보유량, 개발가능성)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 업 비] 50,000천원(군 50,000) ▶ 순증 ○ [사업내용] 석재산업 실태조사, 원석 부존현황 및 수급 분석, 정책 활용 등 ○ [증감사항] 신규 편성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거창화강석 산업의 객관적인 실태와 원석 부존현황 등을 조사하여 향후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지역 특화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기존의 화강석·채석 관련 행정자료 및 선행 조사자료가 있다면 중복 여부를 확인해보았는지, 특히 <u>5천만 원의 사업비로 원석의 부존량 및 개발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u> 대한 설명을 요함. ☞ 또한, 단순한 산업현황 파악에 그칠 경우 용역의 정책적 활용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u>산업의 문제점 분석과 경쟁력 강화방안, 판로 확대, 가공산업 육성, 기업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및 후속사업 발굴까지 과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u> ☞ <u>거창군 화강석 산업은 '성장산업'이라기보다 '기존 산업의 구조전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고부가가치 석재산업으로 생존과 재도약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u>

사 업 명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 (p271, p46)
내 용	○ [사업목적] 석분폐기물 운반비를 지원하여 적정 처리 유도 및 석재업체 경영 부담 완화 ○ [사 업 비] 21,429천원(군 15,000, 자부담 6,429) ▶ 15,000천원 증

	○ [사업내용]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 ○ [증감사항] 신규 편성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석재업체에서 발생하는 석분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 석재산업 보호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u>석분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배출자가 적정 처리하여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업체의 운반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지원 필요성과 정책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u> ☞ 또한 총사업비 21,429천원 중 군비 15,000천원을 지원하는 만큼 업체별 지원기준, 운반단가 및 지원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받은 석분폐기물이 실제 적정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u>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만으로 현재 침체된 거창군 화강석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거나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u> ☞ 현재 거창 화강석 산업은 건설경기 침체, 저가 수입석재와의 경쟁, 원석 확보 및 자원 고갈, 시설 현대화 부담,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u>단순한 비용 보조보다는 판로 확대, 가공시설 현대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원석 확보 가능성 조사 및 석분 자원화 등 종합적인 산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u> ☞ 특히, 석분을 단순히 처리해야 할 폐기물로 접근하기보다는 재활용 및 자원화 가능성을 조사하여 석분 처리비 지원을 넘어 새로운 제품 및 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1개소) (p272, p49)
내 용	○ [사업목적]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통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기여

	○ [사 업 비] 0원 ▶ 99,510 전액삭감 ○ [사업내용] 울타리 설치, 산양삼 식재 등 비용 지원 ○ [증감사항]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예산 삭감
검토의견	☞ 국비 지원율이 약 67%나 되는 사업인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자부담 확보나 사업성 부족 등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었는지 설명을 요함. ☞ 해당 사업이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이라는 정책목적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비를 무조건 삭감하기보다 사업자를 재공모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을 요함. ☞ 사업 포기에 따른 전액 삭감은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 사업이 단순한 개별 농가 지원이 아니라 임산물 생산기반의 규모화·현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포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사업 수요가 확인될 경우 재공모 등을 통해 사업목적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산불감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p272, p51)
내 용	○ [사업목적]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조기 발견을 통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사 업 비] 2,837,833천원(군 2,837,833) ▶ 176,880천원 증 ○ [사업내용] 산불예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 [증감사항] - 산불진화대 임금(90,560원)과 산불감시원(82,560원)의 임금격차(8천원) 해소
검토의견	☞ 당초 산불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의 일급이 각각 90,560원과 82,560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무엇인지, 두 직종의 업무내용, 근무여건, 책임, 위험성에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함. ☞ 또한,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인력 확보와 산불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사 업 명	산불진화차 대체 구입 (p273, p52)
내 용	○ [사업목적] 산불진화장비 확충으로 체계적인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사 업 비] 100,000천원(국 20,400, 도 9,180, 군 70,420) ▶40,000천원 증 ○ [사업내용] 노후 산불진화차량 교체(경유차량 구입) ○ [증감사항] 국도비 변경없이 군비만 4천만원 증액됨
검토의견	☞ <u>기존 차량의 구입연도, 운행거리, 내구연한 및 고장·정비 실적, 당초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한 구체적인 산출근거</u>에 대해 설명을 요함. ☞ 산불진화차량은 일반 승용차와 달리 험준한 산림지역에서 운용되는 특수차량이라는 점에서 경유 차량의 성능상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u>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을 고려할 때, 전기·하이브리드 등 대체 가능한 차량이 있는지</u>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번에 구입하려는 산불진화차량의 조달청 물품분류번호와 품명은 무엇이며, <u>행정안전부 정수관리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u>, 해당한다면 거창군의 정수 배정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u>

사 업 명	대형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p273, p53)
내 용	○ [사업목적] 산림과 인접한 시설물 및 인명피해 예방 ○ [사 업 비] 374,000천원(군 374,000) ▶ 50,000천원 증 ○ [사업내용] 대나무 제거 ○ [증감사항] 읍면 순방건의 사항 반영
검토의견	☞ 당초 사업량과 비교하여 50,000천원 증액으로 추가되는 대나무 제거 면적 또는 구간은 얼마인지, 대나무 제거가 산불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함. ☞ 증액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원 해결을 위한 대나무 제거"인지 "산불·재난 예방을 위한 대나무 제거"인지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산불 예방사업이라면 단순 민원 해결보다는 인명·재산 피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예산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사 업 명	산불예방 홍보물품 제작 구입[성립전] (p273, p54)
내 용	○ [사업목적] 산불예방 홍보를 통한 산불예방 의식 강화 ○ [사 업 비] 48,000천원(도 48,000) ▶ 11,000천원 증 ○ [사업내용] 산불예방 홍보 물품 구입 ○ [증감사항] 2026년 산불대책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검토의견	☞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증액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자원 확보 측면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홍보물품 구입은 자칫 단순 배부성·소모성 경비로 집행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특별교부세의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지, 기존 홍보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물품 구입 및 배부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함. ☞ 특히, 11백만원의 증액분에 대해 '무엇을 몇 개 구입하여 누구에게 어떻게 배부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 업 명	토석류 방호벽 설치사업[성립전] (p273, p56)
내 용	○ [사업목적] 계곡부 아래 다중이용시설 토석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도벽 및 배수시설 설치 ○ [사업비] 32,400천원(국 22,680 도 2,916 군 6,804) ▶<u>순증</u> ○ [사업내용] J형 개거 15m 및 U형 개거 60m 설치 ○ [증감사항] 산림청 토석류 방호벽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검토의견	☞ 계곡부 하류의 다중이용시설에 토석류가 유입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차단시설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며, 총사업비 32,400천원 중 국비 22,680천원(70%), 도비 2,916천원, 군비 6,804천원으로 국·도비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군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음. ☞ <u>산림청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과 해당 지역이 선정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u>, 시범사업 이후 토석류 피해 저감 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지 설명을 요함.

사 업 명	산불예방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p274, p57)
내 용	○ [사업목적] 산불에 대한 홍보·단속 실시 및 조기 발견·초동 진화를 통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사업비] 80,000천원(도 24,000, 군 56,000) ▶<u>순증</u> ○ [사업내용] 무인감시카메라 1대 추가 설치 ○ [증감사항] 도비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검토의견	☞ <u>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예정지는 어디이며, 해당 지역을 선정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u>, 기존 산불감시카메라와 비교하여 감시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설명을 요함. ☞ 도비 교부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나, 80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설치 예정지의 산불위험도와 기존 감시시설과의 중복 여부, 감시 사각지대 해소 효과 및 향후 유지관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사 업 명	마을 방치공간 개선 (p274, p59)																								
내 용	○ [사업목적] 주택 철거 공터의 우범지대화 방지 및 마을 안길과의 단차로 인한 차량 통행 위험 개선을 위한 정비 ○ [사 업 비] 170,000천원(군 170,000) ▶순증 ○ [사업내용] 부지매입, 성토, 폐기물처리, 구조물 설치 후 소공원 조성 ○ [증감사항] 읍면 순방건의 사항으로 신규 편성																								
검토의견	☞ 해당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매입해야 할 필요성과 향후 활용계획이 명확해야 함. ☞ 당초 목적이 '우범지대화 방지 및 차량 통행 위험 개선'이라면 최소한의 철거, 성토, 안전시설 설치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소공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 단순 민원 해소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의 활용성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함. ※ 이 외 순방 건의 반영 사업 내역 <table><tr><th>사 업 명</th><th>위 치</th><th>사업비 (천원)</th><th>사 업 내 용</th></tr><tr><td>강천~어인 지방도 십리 벚꽃길 수목 정비</td><td>웅양면 산포리 867-1일원</td><td>20,000</td><td>가지치기, 잡관목 제거</td></tr><tr><td>고제 거창저수지 하부 높은다리숲 유지보수</td><td>고제면 농산리 991-1 일원</td><td>30,000</td><td>수목 방제, 풀베기, 초화 류 식재</td></tr><tr><td>위천면 도로변 경관개선</td><td>위천면 입구~수송대 일원</td><td>40,000</td><td>초화류 보완식재</td></tr><tr><td>아림교 앞 소공원 내정자 설치</td><td>거창읍 상림리 155-61</td><td>15,000</td><td>정자 설치 1개소</td></tr><tr><td>가북면 면소재지 소공원 조성</td><td>가북면 우혜리 1887-2일원</td><td>50,000</td><td>조경</td></tr></table>	사 업 명	위 치	사업비 (천원)	사 업 내 용	강천~어인 지방도 십리 벚꽃길 수목 정비	웅양면 산포리 867-1일원	20,000	가지치기, 잡관목 제거	고제 거창저수지 하부 높은다리숲 유지보수	고제면 농산리 991-1 일원	30,000	수목 방제, 풀베기, 초화 류 식재	위천면 도로변 경관개선	위천면 입구~수송대 일원	40,000	초화류 보완식재	아림교 앞 소공원 내정자 설치	거창읍 상림리 155-61	15,000	정자 설치 1개소	가북면 면소재지 소공원 조성	가북면 우혜리 1887-2일원	50,000	조경
사 업 명	위 치	사업비 (천원)	사 업 내 용																						
강천~어인 지방도 십리 벚꽃길 수목 정비	웅양면 산포리 867-1일원	20,000	가지치기, 잡관목 제거																						
고제 거창저수지 하부 높은다리숲 유지보수	고제면 농산리 991-1 일원	30,000	수목 방제, 풀베기, 초화 류 식재																						
위천면 도로변 경관개선	위천면 입구~수송대 일원	40,000	초화류 보완식재																						
아림교 앞 소공원 내정자 설치	거창읍 상림리 155-61	15,000	정자 설치 1개소																						
가북면 면소재지 소공원 조성	가북면 우혜리 1887-2일원	50,000	조경																						

사 업 명	산림레포츠파크 야외 화장실 설치 (p275, p67)
내 용	○ [사업목적]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 ○ [사 업 비] 150,000천원(군 150,000) ▶<u>순증</u> ○ [사업내용] 야외화장실 설치 ○ [증감사항] 신규편성
검토의견	☞ 1억 5천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함.

□ 환경과

<세출예산>(예산서 P279)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41,371,147	35,396,107	5,975,040	16.88
수질개선특별회계	3,253,310	3,075,581	177,729	5.78

○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9억 7,504만 원이 증액(16.88%)된 413억 7,114만 7천원으로 편성됨.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772만 9천원이 증액(5.78%)된 32억 5,331만 원이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전기승용차 구입 지원(성립전)	⇒	280,000천원	증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	△50,000천원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18,000천원	
- 소각시설 개선사업(성립전)	⇒	5,178,000천원	증
-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	⇒	18,400천원	순증
- 비상안심벨 설치	⇒	△50,400천원	
-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성립전)	⇒	60,600천원	증
- 국가정원 품질평가 프로그램 확대 운영비	⇒	10,000천원	순증
- 열대식물원 창호 환경경비	⇒	10,000천원	순증
- 창포원 전기요금	⇒	50,000천원	증
-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운영	⇒	32,000천원	증
- 거창창포원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	500,000천원	순증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성립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p279, p73)
내 용	○ [사업목적] 대기오염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천 ○ [사 업 비] 1,054,000천원(국 600,000, 도 94,000, 군 360,000) ▶ 280,000천원 증 ○ [사업내용]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 [증감사항] 국·도비 추가 교부
검토의견	☞ <u>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보급 물량과 현재까지 실제 보급 실적은 각각 몇 대인지, 국·도비 추가 교부로 전기자동차 몇 대를 추가 보급할 수 있는지</u>, 단순히 보급 대수를 확대하는 것 외에 충전시설 부족 등 전기차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함. ☞ 우리 군의 전기차 보급 대수와 목표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지,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인프라는 충분한지, 우리군은 읍에 모든 시설이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읍·면별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외부재원 확보와 연계하여 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증액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u>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도비 확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군민의 구매수요에 따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까지의 보급 실적과 추가 수요,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한 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u>

사 업 명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p280, p76)
내 용	○ [사업목적]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 ○ [사 업 비] 16,000천원(군 16,000) ▶ 4000천원 감 ○ [사업내용] 재활용품 매입금액의 40%, 파병 30원/kg(무상매입) 지원 ○ [증감사항] 재활용품 수집물량 감소에 따른 감액

검토의견	☞ 재활용품 수집물량 및 전년도 집행실적 감소를 반영한 4백만원 감액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타당하나, <u>수집물량 감소 원인이 재활용품 발생량 감소인지, 수집 참여자 감소인지</u>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라는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단순한 예산 삭감에 그치지 않고, 수집 참여 확대와 재활용품 회수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홍보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

사 업 명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보조] (p281, p77)
내 용	○ [사업목적] 농촌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기반조성 ○ [사 업 비] 62,000천원(국 15,000, 도 15,000, 군 32,000) ▶18,000천원 감 ○ [사업내용]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10개소) ○ [증감사항] 국·도비 감액 교부
검토의견	☞ 국도비 삭감분만 반영하고 군비는 그대로 유지하여 <u>군비 부담률이 40% → 50%로 늘었음.</u> ☞ 총사업비가 80,000천원에서 62,000천원으로 감소했음에도 공동집하장 10개소 설치계획은 그대로 추진 가능한지? ☞ 10개소 설치라는 사업량은 유지하면서 사업비만 18,000천원 줄어든 경우라면, 개소당 설치비가 과도하게 낮아져 시설의 규모·내구성 등이 부실해지는 것은 아닌지 설명을 요함.

사 업 명	[성립전] 소각시설 개선사업[보조] (p281, p78)
내 용	○ [사업목적] 기존 소각시설 노후 및 발생 폐기물량 증가에 따른 소각시설 개선(신설) ○ [사 업 비] 7,832,000천원(국4,189,000, 도1,093,000, 군2,550,000) ▶5,178,000천원 증 * 총사업비: 34,131,000천원(국 9,778,000, 도 7,168,000, 군 17,185,000) ○ [사업내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식 (48톤/일) - 연면적 3,471.89㎡(지하1층/지상 4층) / 고효율 복합식 스토커식(연속식) ○ [증감사항] 추경 성립전 국비 편성에 따른 군비 매칭분 반영
검토의견	☞ 48톤/일 규모의 소각시설을 산정한 폐기물 발생량 및 장래 수요에 측 근거는 무엇인지, 기존 소각시설의 처리능력과 노후 정도, 시설 개선·대보수와 비교하여 신설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설명을 요함.

사 업 명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p282, p83)
내 용	○ [사업목적] 경상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2026-2035) 수립에 따라 거창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가축분뇨 적정 관리도모와 장기적 정책목표 제시 ○ [사업비] 18,400천원(군 18,400) ▶순증 ○ [사업내용] 거창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용역 수립 ○ [증감사항] 신규 편성
검토의견	☞ 거창군의 기존 가축분뇨 관련 자료와 환경부·경남도 자료를 활용할 경우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는 없는지? ☞ 용역을 통해 기존 계획과 달리 새롭게 도출되는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인지? ☞ 신규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u>단순한 법정·행정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거창군의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중장기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과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u> ☞ 특히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한 용역비 지출을 방지하고, 용역 결과가 향후 가축분뇨 처리 시설 확충·악취 저감·자원화 사업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2. 12. 31.> 1.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④ <u>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사 업 명	공중화장실 관리 (p283, p87)
내 용	○ [사업목적]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와 노후화 시설 개선, 안심비상벨 법적 의무설치 등으로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 ○ [사업비] 110,000천원(군110,000) ▶ 9,600천원 증 ○ [사업내용] 갈계마을 문화유산 탐방객 편의증진과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1식 ○ [증감사항] - 안심비상벨 설치와 관련 국비 확보에 따라 군비 감액 및 세부사업명과 예산과목 변경(사무관리비 → 시설비) - 읍·면 순방 시 갈계마을 문화재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1개소 60,000천원 증액 편성
검토의견	☞ <u>갈계마을 문화재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위치는 어디이며, 해당 위치를 선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u> ☞ 신규 화장실 1개소 설치비 60,000천원의 세부 산출내역은 무엇이며, 예상 이용객 수와 이용 수요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비 60,000천원은 적지 않은 규모인 만큼 사업 위치·이용수요·설치규모 및 공사비 산출근거와 향후 유지관리 계획을 확인한 후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읍·면 순방 건의사항 반영 사업인 만큼

	단순 민원성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문화유산 탐방객 증가 등 객관적인 이용수요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사 업 명	거창창포원 운영 (p284, p92)
내 용	○ [사업목적] 거창창포원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 ○ [사 업 비] 395,320천원(군 395,320) ▶ 90,000천원 증 ○ [사업내용] 거창창포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 [증감사항] - 거창창포원 하반기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 및 홍보, 운영 물품 구입등 사무관리비 증가 - 거창창포원 야간경관조명 본격운영 등 공공요금 증가
검토의견	☞ 거창창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당초 305,320천원에서 395,320천원으로 90,000천원 증액하는 사항임. ☞ 증액 내역은 ▲창포원 운영시설 순회순찰 20,000천원 ▲국가정원 품질평가 프로그램 확대 운영 10,000천원 ▲열대식물원 창호 환경정비 10,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00천원으로, <u>행사성 경비보다는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중심인 것으로 확인됨.</u> ☞ 특히 <u>공공요금 및 제세가 50,000천원 증액되어 전체 증액액의 55.6%를 차지하고 있어, 야간경관조명 본격 운영에 따른 전기료 증가분인지, 그 밖의 공공요금 증가분이 포함된 것인지</u> 구체적인 산출근거 확인이 필요함. ☞ 야간경관조명 운영에 따른 연간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증가액은 어느 정도이며, <u>야간 이용객 증가 등 실질적인 운영효과</u>가 있는지? ☞ 국가정원 품질평가 프로그램 확대 운영비 10,000천원은 국가정원 지정·평가와 관련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사 업 명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p285, p94)
내 용	○ [사업목적]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시민정원사 양성 심화과정 개설 ○ [사 업 비] 64,000천원(군 64,000) ▶ 32,000천원 증 ○ [사업내용] 시민정원사 양성 심화 교육과정(16주) 신설 ○ [증감사항] - 시민정원사 인증 취득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 신설 필수

	※ 산림청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대상 지표 - 시민정원사 활용(정량)
검토의견	☞ 심화과정 교육대상 및 모집인원은 몇 명이며, 1인당 교육비는 얼마인지? ☞ 심화과정 수료 후 시민정원사를 거창창포원 등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 산림청 평가에서 '시민정원사 활용' 지표의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현재 거창군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 기존 시민정원사 양성과정과 심화과정의 교육내용 및 자격 차이는 무엇인지? ☞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시민 참여형 정원관리 기반 마련이라는 사업 취지는 타당하나, <u>32,000천원의 증액이 단순 교육과정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원 지정 평가 및 실제 정원 운영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u> 교육 수료자의 활용계획과 성과관리 방안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거창창포원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p285, p95)
내 용	○ [사업목적] 거창창포원에 부족한 주차장 조성으로 통행안전성 확보 및 거창창포원 가치증대에 기여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반 마련 ○ [사 업 비] 500,000천원(균 500,000) ▶ 순증 ○ [사업내용] - 노상주차장 조성 1식(약60면)[1,500㎡(L=210m × B=7.0m)] - 이동식 화장실 1개소 ○ [증감사항] 2026년 상반기 공무원 제안 채택에 따른 추경 예산 편성
검토의견	☞ <u>1,500㎡ 규모의 노상주차장과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총 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주차면당 약 833만원 수준의 사업비가</u> 소요 될 것으로 보임. ☞ 거창창포원은 방문객 증가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이용객 편의 및 교통안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됨.

	☞ 특히, 약 6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창포원 주변의 불법·갓길 주차를 줄이고 행사 및 성수기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u>현재 거창창포원의 주차면수와 최근 3년간 주차장 이용현황 및 주차난 발생 실태는 어떠한지, 추가 60면을 산정한 주차수요 분석 또는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있는지?</u> ☞ 해당 장소는 <u>도로부지로 시·도유지로 되어 있는데 사용 승낙 협의 절차는 완료되었는지?</u> ☞ <u>총사업비 5억원 중 노상주차장 조성비와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의 세부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함.</u>
--	---

□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예산서 P289)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66,698,715	59,176,957	7,521,758	12.71
주차장관리	583,957	583,957	0	0
댐주변지역 특별회계	843,384	816,430	26,954	3.30

-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5억 2,175만 8천원이 증액(12.71%)된 666억 9,87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댐주변지역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695만 4천원이 증액(3.30%)된 8억 4,338만 4천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농촌환경정비	⇒	1,330,000천원	증
- 주민편익사업 추진	⇒	2,816,480천원	증
- 도 재정건의 사업 추진	⇒	600,000천원	증
- 농업기반시설 확충	⇒	738,000천원	증
- 소하천 유지보수	⇒	110,000천원	증
- 하천 유지관리	⇒	△318,550천원	
- 응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	⇒	115,624천원	증
- 도로유지관리 소송 배상금	⇒	60,400천원	순증
-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	261,616천원	증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	1,670,000천원	증
-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지원	⇒	45,000천원	증
- 택시 감차보상 사업비 지원	⇒	270,000천원	증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	32,000천원	증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000천원	증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31,300천원	증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농촌환경정비 (p289, p102)
내 용	○ [사업목적] 소규모 공공시설(농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및 세천 등) 정비를 통해 영농불편해소, 재해위험지 정비 등 주민 생활 및 영농편의 도모 ○ [사 업 비] 3,923,000천원(군 3,923,000) ▶ 1,330,000천원 증 ○ [사업내용] 개화마을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등 54건 ○ [증감사항] 주민 건의 사항 반영 / 54건 추가
검토의견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는 대부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예산의 계획성을 저해하고 선심성·민원성 사업 편성 논란 유발 ☞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54건 추가·13억 3천만 원 증액이라는 큰 폭의 사업 확대가 주민 건의사항에 따른 단순 수요 반영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별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명확히 하고, 특히 재해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주민편익사업 추진 (p291, p105)
내 용	○ [사업목적] 소규모 공공시설(농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및 세천 등) 정비를 통해 영농불편해소, 재해위험지 정비 등 주민 생활 및 영농편의 도모 ○ [사 업 비] 11,657,417천원(특123,000, 군11,534,417) ▶ 2,816,480천원 증 ○ [사업내용] 정장 큰구리골 배수로 정비공사 등 49건 외 관리비 등 ○ [증감사항] 주민 건의 사항 반영 / 49건 추가
검토의견	☞ 추가된 49건의 사업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였는지?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민원 중심으로 편성되는 구조로 인해 지역별 형평성 문제, 사업 우선순위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전수조사와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건의 중심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u>3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65,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음. 대상지는 어떤 곳인지?</u> ☞ 제3종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1억 6,500만원의 용역비가 편성된 만큼 <u>대상 시설물의 개소, 규모, 기존 안전점검 결과 및 산출근거</u>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

사 업 명	[성립전] 도재정건의사업 추진 (p294, p107)
내 용	○ [사업목적] 영농불편해소, 안길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생활 및 영농편의 도모 ○ [사업비] 895,000천원(조 895,000) ▶ 600,000천원 증 ○ [사업내용] 진목 조상들 옆 농로 포장공사 등 15건 ○ [증감사항]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검토의견	☞ <u>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사업비가 6억원 증액된 사업으로,</u> 진목 조상들 옆 농로 포장 등 15건의 정비를 통해 농로 및 마을 안길의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다수의 소규모 사업이 포함된 만큼 <u>사업별 대상지 선정의 타당성, 시급성 및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u>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별 세부내역과 위치, 사업량 및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여 연내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p296, p111)
내 용	○ [사업목적] 저수지 본래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 안정성 확보 및 시설 점검을 통한 재해위험 요인 사전 제거 ○ [사업비] 0천원 ▶ 전액삭감 ○ [사업내용] 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 [증감사항] 각 읍.면에서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자체 수립 추진으로 감액
검토의견	☞ 이 사업은 당초 군에서 일괄 용역을 추진하려던 것을 읍.면 자체 수립으로 전환하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보임. ☞ <u>읍.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면 전문성·계획의 통일성·법정 기준 충족 등의 문제가 없는지</u> 설명을 요함.

사 업 명	군도 확·포장 (p299, p121)
내 용	○ [사업목적] 면과 면을 연결하는 교통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군도 확·포장의 원활한 추진으로 이용자 교통편의 제공 ○ [사 업 비] 100,000천원(군 100,000) ▶ 1,000,000천원 감 ○ [사업내용] 군도17호선(웅양 신촌) 확·포장공사 ○ [증감사항] 마을주민 의견수렴 기간 소요로 사업비 감액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군도 17호선의 약 1.9km 구간을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도로의 안전성 및 지역 간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노선(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u>사업계획 및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도로사업 추진 시에는 기본적인 노선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u>

사 업 명	도로 유지관리 (p300, p123)
내 용	○ [사업목적] “가조 들마마을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추진시 과속방지턱 표지판 설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발생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 [사 업 비] 60,400천원(군 60,400) ▶ 60,400천원 증 ○ [사업내용] 손해배상금 지급 ○ [증감사항] 신규 편성
검토의견	☞ 본 예산은 「가조 들마마을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속방지턱 표지판 설치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임. ☞ 당초 도로 정비사업 시행 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기준과 안전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아서 패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 <u>판결 주요 내용, 배상 책임의 발생 원인 및 군의 귀책 사유,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함.</u>

사 업 명	도로 유지관리[가조 농어촌도로201호선] (p300, p126)
내 용	○ [사업목적] 노후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 ○ [사 업 비] 261,616천원(특 261,616) ▶ 순증 ○ [사업내용] 아스콘 덧씌우기 L=1.0km, B=7.0m ○ [증감사항] 특별조정교부금 재투자에 따른 예산 편성
검토의견	☞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외부재원이 확보된 점과 도로 안전성 확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하면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u>재원 교부 목적의 적정성, 해당 도로의 노후도·교통량·사고위험 등 선정 기준</u>과 우선순위, 아스콘 덧씌우기 외에 도로 절삭, 기층 보수, 배수시설 정비, 차선도색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u>사업비 산출근거</u>에 대한 설명을 요함.

사 업 명	대중교통 운행 지원 (p301, p129)
내 용	○ [사업목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사 업 비] 120,000천원(조100,000, 군20,000) ▶ 100,000천원 증 ○ [사업내용]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 [증감사항] '26년('25년 실적) 시·군 교통행정 평가 시상금(특별조정교부금 100,000천원) 반영
검토의견	☞ 시·군 교통행정 평가 시상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승강장 이용환경 개선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목적 재원에 따라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설치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u>스마트 버스승강장의 설치·운영에 따른 전기료, 유지관리비 등 향후 군비 부담도 고려해야 함.</u> ☞ <u>설치장소는 어디인지?</u> 1개소 설치에 1억원이 드는데, 냉·난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u>세부 사양</u>과 교통약자 이용 빈도가 높거나 대기환경이 열악한 승강장을 우선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함.

사 업 명	노후택시 교체 지원 (p302, p132)
내 용	○ [사업목적] 차량경과 노후택시 지원으로 군민 안전 확보 및 택시 경영 부담 완화 ○ [사 업 비] 7,000천원(도 2,100, 군 4,900) ▶ 2,000천원 증 ○ [사업내용] 차량만료 예정인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1,000천원/대) ○ [증감사항] 도비 증액 교부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 반영
검토의견	☞ 지원대상 7대의 평균 차량과 최고 차량은 얼마인지,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차량 외에 운행거리·노후도 등을 반영하는지, 대당 100만원 지원이 차량 교체를 유도하는 데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함. ☞ 사업 자체는 노후택시 교체를 지원하여 택시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운수업자의 차량 교체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차량이 오래된 택시의 경우 차량 안전성과 이용객 편의 측면에서 교체 지원의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대당 100만원의 지원으로 실제 차량 교체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지와 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u>도비 증액에 따라 사업량을 5대에서 7대로 확대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보조금 교부액 증가에 맞춰 대상 대수를 확대하기 보다는 노후 정도, 차량, 운행거리, 영업기간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u>

사 업 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p302, p133)
내 용	○ [사업목적]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지원 보조금 ○ [사 업 비] 3,670,000천원(군 3,670,000) ▶ 1,670,000천원 증 ○ [사업내용] 버스, 택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 ○ [증감사항]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전년 대비 유가 급상승 등
검토의견	☞ <u>기정액 대비 16억 7천만 원을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산출근거</u>는 무엇인지, 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국·도비 지원 확대 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요함. ☞ 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기정액 대비 1,670,000천원(약 83.5%)이 증액된 만큼, 최근 유가 상승분과 운수업체별 유류 사용량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증액 산출근거 및 최근 연도 집행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또한 버스·택시·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지원 대상별로 유류 사용량과 지원액에 차이가 있는 만큼, <u>지원 대상별 배분기준과 향후 유가 변동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u> ○ 특히 유가가 하락할 경우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유가 및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함.
--	---

사 업 명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p302, p134)
내 용	○ [사업목적]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통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 [사 업 비] 836,580천원(국 130,000, 기 26,000, 군 680,580) ▶ 22,460천원 증 ○ [사업내용]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비 지원(추경성립전) 및 바우처택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등 운영 ○ [증감사항] -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비 지원사업(추경성립전) 국비(복권기금) 공모사업 선정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국비(운영비) 증액 교부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 반영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군비(인건비) 소요예산 증액에 대한 사업비 조정분 반영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복권기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u>든든카 안심케어</u>' 사업비 15,300천원이 신규 반영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국비 및 군비가 추가 조정됨에 따라 총 22,460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u>증액된 인건비의 경우 운전원 인력 증원 여부, 인건비 단가 및 실제 운행수요 증가 등 예산 증액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함.</u> ☞ 또한,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이용 예상 인원은 얼마인지 답변을 요함. ※ '<u>2026년 든든카(Car) 안심케어(Care) 시범사업</u>' ○ 공모선정: 2026. 3. 11.

	○ 지원대상: 와상장애인 ○ 지원내용: 사설구급차 이용시, 10km이내 기본요금 7만 5천원 중 자부담 1만원을 제외한 6만 5천원을 기준으로 월 2회 까지 편도 운행에 한해 지원함.
--	---

사 업 명	농어촌버스 요금할인 지원 (p303, p136)
내 용	○ [사업목적]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요금의 10%할인 적용에 따른 버스업체 손실 보전 ○ [사 업 비] 90,000천원(군 90,000) ▶ <u>45,000천원 증</u> ○ [사업내용] 교통카드 사용으로 10% 할인된 버스 요금의 손실액 보전 ○ [증감사항] -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액 증가 - 전년도 미지급분(20,636천원)* 지급 (※ 전년도 총이용액 : 65,636,210원 / 전년도 지급액 : 45,000,000원 / 미지급분 20,636,210원)
검토의견	☞ <u>이용객 증가분, 교통카드 이용 건수, 할인금액 등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u> ☞ <u>특히, 전년도 미지급분 20,636천원을 2026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회계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됨.</u> ☞ <u>다만,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2025년도에 채무가 확정되었으나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라면 2026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여짐.</u> ☞ <u>2025년도에 채무가 확정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u>

사 업 명	택시 감차보상(보조) (p303, p137)
내 용	○ [사업목적] 택시업계의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운영 정상화 및 택시산업 발전도모를 위해 감차보상사업 추진 ○ [사 업 비] 500,000천원(국 27,300, 군 472,700) ▶ <u>270,000천원 증</u> ○ [사업내용] 택시 7대(법인 4, 개인 3) 감차 보상비 지원 ○ [증감사항] 국비 증액 교부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 반영(3대→7대)
검토의견	☞ <u>택시업계의 과잉공급 해소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 증액 교부에 따라 감차 물량이 3대에서 7대로 확대된 점은 인정됨.</u>

	☞ 다만, <u>감차보상은 개인·법인택시 사업자의 면허를 실제 감차하는 사업인 만큼, 감차 대상 7대의 선정기준과 보상단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u> ☞ 특히 총사업비 5억원 중 군비 부담액이 472,700천원으로 전체의 약 94.5%를 차지하고 있어, 국비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군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임. ☞ 따라서 향후 감차사업 추진 시 지역 내 택시 수요 및 적정 공급 대수, 감차에 따른 재정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차 물량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

사 업 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p304, p141)
내 용	○ [사업목적]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 지원으로 서민과 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촉진 ○ [사 업 비] 126,000천원(국 63,000, 도 25,200, 군 37,800) ▶ 32,000천원 증 ○ [사업내용] 만19세이상, 월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환급 지원 ○ [증감사항] 국비 증액 교부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 반영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교통비를 환급하여 서민 및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이번에 32,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국비 증액 교부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의한 것으로, <u>국비 증액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거창군 이용자 증가에 대한 설명을 요함.</u> ☞ 또한 2026년부터 K-패스가 '모두의 카드' 방식으로 개편되어 환급 방식 및 이용자 혜택이 변경된 점을 감안할 때, <u>전년도 집행실적과 금년도 예상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편성액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u>

사 업 명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 (p304, p143)
내 용	○ [사업목적]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나대지 등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환경 개선

	○ [사 업 비] 1,029,676천원(군 1,029,676) ► 1,600천원 감 ○ [사업내용]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저층주택, 나대지 매입으로 소규모 주차장 조성 ○ [증감사항] 사업완료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액
검토의견	☞ 소규모 공동 주차장은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으로 특히, 구도심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기존 도로 및 건축물로 인해 대규모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인 만큼, ☞ <u>나대지·노후주택 등 소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동주차장 조성은 현실적인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판단됨.</u> ☞ 특히 불법 주·정차 감소, 보행환경 및 소방도로 확보 등 주민 생활안전 측면에서도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u>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u>

□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예산서 P309)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26,905,534	22,024,245	4,881,289	22.16

○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8,128만 9천원이 증액(22.16%)된 269억 553만 4천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도시계획시설 소파 보수 사업	⇒	700,000천원	증
- 도시계획도로 연결구간 확장사업	⇒	500,000천원	증
- 한들대교(보강) 실시설계용역	⇒	200,000천원	순증
- 가조면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	⇒	80,000천원	순증
-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2공구)	⇒	2,000,000천원	순증
- 더샵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 조성	⇒	200,000천원	증
- 거창 동천 개화교 재가설 공사	⇒	△700,000천원	
- 남상 대산리 교량 재가설 공사	⇒	250,000천원	순증
- 한들대교 계측 관리 시스템구축사업	⇒	450,000천원	순증
- 거열산성 진입도로 국도3호선 연결공사	⇒	700,000천원	순증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	350,000천원	증
- 임차급여	⇒	233,750천원	증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소규모 도로 관리 (p310, p156)
내 용	○ [사업목적]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 [사 업 비] 3,793,255천원(군 3,793,255) ▶ 1,496,725천원 증 ○ [사업내용] 도시계획시설 정비 ○ [증감사항] - 관리 중인 도시계획도로 내 시설물 공공요금 비용 증가분 반영 - 도시계획도로(차도, 보도, 데크 등)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 도시계획도로 연결구간 확장사업 보상 및 사업비 반영 - 한들대교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 - 2026년 읍·면 순방건의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정비 반영
검토의견	☞ 도로시설물 보수 7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필요함. ☞ 한들대교는 2021. 5. 13. 개통 후 5년 만에 보강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보강설계 2억원에는 정밀안전진단, 구조검토, 내진성능 평가 등이 포함된 것인지, 용역 후 실제 보강공사비가 얼마로 예상되는지 설명을 요함. ☞ 아울러, 교량 개통 후 상당히 짧은 기간 내 발생한 문제라면 시공사 또는 설계 관련 업체의 하자책임 범위가 있는지 우선 검토하여 군비로 전액 보강비를 부담하기 전에 하자보수, 손해배상 또는 계약상 책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도시계획도로 개설 (p310, p159)
내 용	○ [사업목적] 거창군 관내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통행불편 해소와 도시기반 확충 ○ [사 업 비] 2,700,000천원(군 2,700,000) ▶ 200,000천원 증 ○ [사업내용] 양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8건 ○ [증감사항] - 더샵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1-78호선) 보상비 및 일부 사업비 반영 -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당초) 거창 동천 개화교 재가설 ⇨ (변경) 남상 대산리 교량재가설, 한들대교 계측 관리시스템 구축
검토의견	☞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함.

사 업 명	거열산성 진입도로 국도3호선 연결공사 (p311, p160)										
내 용	○ [사업목적]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환경개선										
	○ [사 업 비] 700,000천원(군 700,000) ▶순증										
	* 총사업비:										
	<table><tr><th>총계</th><th>기투자</th><th>2026년</th><th>향후 계획</th></tr><tr><td>6,000,000</td><td>630,000</td><td>700,000</td><td>4,670,000</td></tr></table>	총계	기투자	2026년	향후 계획	6,000,000	630,000	700,000	4,670,000		
총계	기투자	2026년	향후 계획								
6,000,000	630,000	700,000	4,670,000								
	○ [사업내용] 국도3호선 가감속차로 L=460m, 연결도로 L=270m										
	○ [증감사항] 26년도 사업비 반영										
검토의견	☞ 연차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 국도3호선에 L=460m의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인 만큼, 국도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도로 연결에 대한 기술적·교통적 타당성은 검토되었는지?										
	☞ 특히 가감속차로 설치로 실제 교통사고 위험 감소와 교통흐름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요함.										

사 업 명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p311, p161)																																														
내 용	○ [사업목적]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복합차고지, 고속도로 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도심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이동을 차단하고, 탄소흡수원 확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																																														
	○ [사 업 비] 2,000,000천원(기금 1,000,000 도 300,000 군 700,000)																																														
	* 총사업비																																														
	<table><tr><th colspan="4">총계(자부담 포함)</th><th colspan="4">기투자</th><th colspan="4">2026년</th></tr><tr><th>계</th><th>기금</th><th>도비</th><th>군비</th><th>계</th><th>기금</th><th>도비</th><th>군비</th><th>계</th><th>기금</th><th>도비</th><th>군비</th></tr><tr><td>5,000,000</td><td>2,500,000</td><td>750,000</td><td>1,750,000</td><td>3,000,000</td><td>1,500,000</td><td>450,000</td><td>1,050,000</td><td>2,000,000</td><td>1,000,000</td><td>300,000</td><td>700,000</td></tr></table>												총계(자부담 포함)				기투자				2026년				계	기금	도비	군비	계	기금	도비	군비	계	기금	도비	군비	5,000,000	2,500,000	750,000	1,750,000	3,000,000	1,500,000	450,000	1,050,000	2,000,000	1,000,000	300,000
총계(자부담 포함)				기투자				2026년																																							
계	기금	도비	군비	계	기금	도비	군비	계	기금	도비	군비																																				
5,000,000	2,500,000	750,000	1,750,000	3,000,000	1,500,000	450,000	1,050,000	2,000,000	1,000,000	300,000	700,000																																				
	○ [사업내용] 탄소저장숲(제2창포원 3.5ha)																																														
	○ [증감사항] 기금 및 도비 확보로 군비(매칭사업) 편성																																														
검토의견	☞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50억 원을 확보했으며, 거창복합차고지 1.5ha와 제2창포원 3.5ha 등 총 5ha에 미세먼지 차단숲·탄소저장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재원은 기금 25억 원, 도비 7억 5천만 원, 군비 17억 5천만 원임.																																														

	☞ 2026년 군비 매칭분 7억원을 한꺼번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이유는? ☞ 제2창포원은 이미 창포원이라는 대규모 녹지·관광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음. 단순히 나무를 추가 식재하는 수준이라면 기존 창포원 사업과 차별성이 약하다고 보여짐. ☞ 특히 이번 사업의 본래 목적은 미세먼지 차단, 탄소흡수원 확충, 기후위기 대응이므로, 단순 경관 개선보다는 미세먼지 발생원과의 관계, 바람길, 수종의 탄소흡수 및 차단효과 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요함.
--	--

□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예산서 P317)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29,390,668	27,814,980	1,575,688	5.66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4,968,700	4,193,895	774,805	18.47

- 농업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7,568만 8천 원이 증액(5.66%)된 293억 6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7,480만 5천 원이 증액(18.47%)된 49억 6,870만 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농업진흥지역 국토이용정보체계 정비 용역	⇒	8,000천원	순증
-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인건비	⇒	416,663천원	증
-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운영비	⇒	54,552천원	증[성립전]
- 농어업인수당	⇒	37,400천원	
- 경상남도 지역특화축제 지원(아리미아꽃축제)	⇒	11,000천원	증[성립전]
-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22,750천원	순증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운영비	⇒	△10,000천원	전액삭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	329,829천원	증
- 청년농업인 맞춤형지원(비닐하우스설치)	⇒	300,000천원	순증[성립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운영비	⇒	17,200천원	순증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	△380,844천원	
-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	⇒	△231,700천원	

-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자체재원)	⇒	231,000천원	
- 조사료생산용 기계 장비	⇒	△246,200천원	
- 살처분 보상금 지원	⇒	674,511천원	증[성립전]
-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	4,800천원	순증
- 가축질병 확산방지 긴급방역비	⇒	30,000천원	순증
- 생계안정비용 지원사업	⇒	19,216천원	순증
- 살처분등 비용 지원	⇒	285,286천원	순증
- 방역보조원 운영지원 사업	⇒	8,490천원	순증
-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개사육농장)	⇒	55,240천원	증
-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철거비 등)	⇒	△79,200천원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농업진흥지역 국토이용정보체계 정비 용역 (p317, p175)
내 용	○ [사업목적]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지형도면 반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부상 대장 정비 ○ [사 업 비] 8,000천원(군 8,000) ▶ <u>8,000천원 증</u> ○ [사업내용] 진흥구역 해제 필지 지형도면 반영 및 대장 정비 등 ○ [증감사항] 신규 편성
검토의견	☞ 2016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필지가 총 몇 필지인가? ☞ 8백만원은 어떤 산출근거로 편성했는지? 필지당 단가인지, 면적 또는 도면 건수 기준인지? ☞ <u>이미 해제 고시된 지 오래된 필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공부상 정비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u> ☞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련 공부 및 지형도면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담당 부서의 고유 행정업무 성격이 강한 만큼 8백만원의 외부 용역 추진이 불가피한지, 대상 필지와 작업량 및 자체 처리 가능한지 설명을 요함.

사 업 명	[성립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p317, p177)
내 용	○ [사업목적] 농지투기 근절 및 DB구축 목적으로 농지 전수조사 실시 및 비농업인 소유 농지, 유휴지 확인 등을 통한 농지 대장 현행화 ○ [사 업 비] 614,541천원(기 414,978, 군 199,563) ▶ 417,225천원 증 ○ [사업내용] 농지 전수조사 및 조사원 관리(인건비·운영비 지급) ○ [증감사항] 국비 변경교부에 따른 증액 편성
검토의견	☞ 농지 전수조사는 실제 농지 이용현황과 농지대장의 불일치를 정비하고 비농업인 소유·유휴농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기정액 대비 417,225천원(약 211%)이 증액된 규모로, 단순 국비 변경교부에 따른 증액인지, 조사대상 필지 증가 및 조사인력 확대 등 실제 사업량 증가가 수반되는지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 관리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일회성 조사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 결과의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등 활용계획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p319, p182)
내 용	○ [사업목적] 청년농업인들의 정보교류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증진 ○ [사 업 비] 0천원 ▶ 9,230천원 전액삭감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 [증감사항] 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감액 편성
검토의견	☞ 청년농업인 간 정보교류와 협업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의 활력 제고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 도비 변경 교부를 사유로 당초 편성한 9,230천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인지?

	☞ 도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와 도비 미지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군비를 일부라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을 요함.
--	---

사 업 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p321, p189)
내 용	○ [사업목적]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 ○ [사 업 비] 1,169,829천원(군 818,880, 도 105,285, 군 245,664) ▶ <u>319,829천원 증</u> ○ [사업내용]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1년차 월 110만원, 3년차까지 지원) ○ [증감사항]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증액 편성,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른 감액
검토의견	☞ 현재 1년차 ~ 3년차까지 지원 대상은 몇 명인지? 지원금액은 월 110만원으로 동일한지? ☞ <u>금회 319,829천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것인데, 단순 매칭인지, 실제 지원대상자가 늘어서 수요를 반영한 것인지?</u> ☞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력 구조 개선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 지원 종료 후에도 실제 농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관리 및 정착률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사 업 명	[성립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p322, p190)
내 용	○ [사업목적] 농업·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 지원 필요 ○ [사 업 비] 600,000천원(도 90,000 군 210,000 자 300,000) ▶ <u>순증</u> ○ [사업내용] 딸기 연동 하우스 신축 등 ○ [증감사항] 도비 교부에 따른 증액 편성

검토의견	☞ 지원대상 농가수는 얼마인지? ☞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설하우스 등 영농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농촌 고령화 및 농업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딸기 연동하우스는 초기 시설투자비가 큰 만큼 청년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총사업비 6억원 중 자부담이 3억원으로 50%에 달하는 만큼, 사업 대상자의 자부담 확보능력과 향후 생산·판매계획, 시설 운영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비 교부에 따른 순증사업인 만큼 단순히 보조금 교부에 맞춘 사업 추진이 되지 않도록,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소득창출로 연결되는지 성과관리가 필요함.
------	--

사 업 명	청년후계농 선발운영비 (p322, p192)
내 용	○ [사업목적]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 ○ [사 업 비] 17,200천원(국 8,600, 도 2,580, 군 6,020) ► <u>순증</u> ○ [사업내용]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운영비 ○ [증감사항]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증액 편성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원활한 대상자 선발을 위한 운영비 성격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u>금회 17,200천원이 전액 순증된 것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것으로, 실제 선발인원 및 사업대상 규모에 따른 소요액인지, 단순 매칭인지?</u> ☞ 특히 <u>선발운영비의 경우 직접적인 농업인 지원보다는 선발·심사 등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인지?</u> ☞ 선발 예정인원, 세부 운영비 산출근거 및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해 설명을 요함.

사 업 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p324, p196)
내 용	○ [사업목적]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 [사 업 비] 1,245,667천원(기 373,700, 도 149,480, 군 597,920, 자 124,567) ▶ 380,844천원 감 ○ [사업내용] 동·하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비닐, 연료 등) ○ [증감사항]국비(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감액 편성
검토의견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등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내산 조사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국비(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380,844천원이 감액(25.3%)된 것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물량 및 지원농가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조사료 생산비 중 비닐·연료비 등 제조비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감액분을 단순히 사업물량 축소로 반영할 경우 농가의 자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 및 물량 조정 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성립전] 살처분 보상금 지원 (p325, p202)
내 용	○ [사업목적] 가축전염병(AI, 소 브루셀라병 등) 살처분 가축 및 소각·매몰 물건에 대한 보상금 지원 ○ [사 업 비] 1,000,543천원(국 800,435, 도 100,054, 군 100,054) ▶ 674,511천원 증 ○ [사업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가축 살처분 등 처리비 ○ [증감사항] 국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증액 편성
검토의견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방역과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국비 변경 교부에 따른 증액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증액 규모의 산출근거와 실제 살처분 발생 현황 및 향후 소요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사 업 명	[성립전] 공수의 방역활동 지원 (p326, p203)
내 용	○ [사업목적] 가축전염병 검진 및 예찰 등 현장 가축방역 추진 ○ [사 업 비] 115,500천원(도 34,650, 군 80,850) ▶ 9,900천원 증 ○ [사업내용] 공수의 방역 활동비 지급 ○ [증감사항]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증액 편성
검토의견	☞ 공수의 인원수와 활동비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함. ☞ 공수의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예찰과 신속한 검진·방역조치를 수행하는 등 지역 가축방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속적인 활동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이번 증액이 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것인 만큼 증액된 사업비가 실제 방역활동 확대 및 현장 대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수의별 활동실적과 방역 추진성과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수의의 방역활동이 단순 활동비 지급에 그치지 않도록 검진·예찰 건수, 농가 방문실적 및 가축전염병 예방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 업 명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 (p327, p206)
내 용	○ [사업목적] 양돈농가 맞춤형 가축질병 및 사양관리 등 컨설팅을 통해 돼지소모성 질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최소화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 [사 업 비] 0원 ▶ 12,000천원 전액삭감 ○ [사업내용]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소모성질환 관리 지원 ○ [증감사항] 국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 편성
검토의견	☞ 국비 미교부에 따라 사업이 폐지 되었는데, ASF 등 가축전염병은 상시적인 예방·관리가 중요한 만큼, 국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방역 및 질병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방역지도나 농가 대상 교육·컨설팅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 업 명	방역보조원 운영지원 사업 (p329, p215)
내 용	○ [사업목적] 공중방역수의사 미배치 등에 따른 시·군 방역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방역보조원(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지원 ○ [사 업 비] 8,490천원(국 3,396, 군 5,094) ▶ <u>순증</u> ○ [사업내용] 방역보조원 인건비 지원 ○ [증감사항] 국비 신규 교부 결정에 따른 편성
검토의견	☞ 공중방역수의사 미배치는 단순히 수의사 1명의 결원 문제가 아니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대응력과 방역행정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음. ☞ 특히, 2026년에는 공중방역수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감소하면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음.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공방수 전체 인력은 2023년 423명에서 2025년 332명으로 감소했고, 2026년 신규 편입 예정자는 2명에 불과함. ☞ <u>공중방역수의사 미배치로 현재 가축방역 업무에 실질적인 공백은 없는지, 수의직 공무원과 공수의만으로 ASF·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동 대응이 가능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u>

사 업 명	농업발전자금 적립금 (p331, p220)
내 용	○ [사업목적] 농업발전자금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사 업 비] 870,762천원(군 870,762) ▶ <u>774,805천원 증</u> ○ [사업내용]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후 유보자금으로 편성 ○ [증감사항] 2026년 본예산 편성이후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결산 자료와 차액 발생
검토의견	☞ 774,805천원은 단순 결산잉여금인지, 융자금 회수액인지, 이자수입인지 구체적인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 '유보자금'은 당장 집행하지 않고 특별회계에 남겨두는 재원이며, '적립금'은 향후 특정 목적이나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의도적으로 축적하는 자금을 의미하는데, ☞ 774,805천원이 결산·정산에 따른 단순 잉여재원인지, 향후 농업발전자금 운용을 위한 적립금인지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원 발생 내역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미래농업과

<세출예산>(예산서 P335)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29,074,955	28,617,046	457,909	1.60

○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790만 9천원이 증액(1.60%)된 290억 7,495만 5천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사업 계획수립 용역	⇒	19,000천원	순증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	21,000천원	순증
- 유기농업자재 지원	⇒	52,543천원	증
-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	⇒	37,400천원	순증
- 3무 농업실천사업 보상금	⇒	22,000천원	증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	194,884천원	순증
-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조성	⇒	5,089천원	순증
- 친환경쌀 소비촉진 지원	⇒	8,000천원	순증
- 지역농산물 활용 제과제빵 아카데미 교육 강사료	⇒	△7,000천원	전액 삭감
- 제과제빵 아카데미 교육 재료비	⇒	△3,000천원	전액 삭감
- 벤처농업 경영체 시제품 개발 시범사업	⇒	18,240천원	순증
-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	⇒	26,200천원	증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	130,000천원	순증[성립전]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천적생태과학관 운영 (p335, p225)
내 용	○ [사업목적] 2027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사업 공모신청 ○ [사 업 비] 19,000천원(군 19,000) ▶ <u>순증</u> ○ [사업내용] 전시시설(A=600m²) 및 체험온실(A=263m²) 개선 계획 수립 용역 시행 ○ [증감사항] 2027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비 편성
검토의견	☞ <u>공모사업이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와 재원 분담 비율은 얼마인지?</u> ☞ 본 사업은 2027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전시시설 및 체험온실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19,000천원의 군비를 선투입하여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만큼,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용역 결과의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공모 선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u>전시시설 600m² 및 체험온실 263m² 개선에 따른 총사업비 규모와 향후 군비 부담액, 운영관리비 증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u>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 추진 자체는 필요성이 있으나, 향후 국·도비 확보 가능성 및 시설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p335, p226)
내 용	○ [사업목적]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 도모 ○ [사 업 비] 21,000천원(도 4,200, 군 16,800) ▶ <u>순증</u> ○ [사업내용]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 [증감사항] 도비 사업선정(33농가 / 85,827m²)에 따른 사업비 편성
검토의견	☞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통해 토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재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2026년 도비 사업 대상자로 33농가, 85,827㎡가 선정됨에 따라 총 21,000천원(도비 4,200천원, 군비 16,800천원)을 편성한 것으로,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토종농산물 재배 확대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u>250원/㎡의 단가와 농가당 최대 150만원의 지급한도를 적용하는 단순 소득보전 방식인 만큼, 지원금 지급에 따른 토종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및 품종 보존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함.</u> ☞ 특히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u>지원농가 수·재배면적·토종품종 유지율·생산량 및 판로확대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u> ☞ 따라서 금회 예산은 도비 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있으나, 향후에는 소득보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토종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까지 연계하여 실질적인 재배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개정 2010.08.19>) ① 농업인 등은 제6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정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

사 업 명	유기농업자재 지원 (p336, p227)
내 용	○ [사업목적]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작물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육성 ○ [사 업 비] 135,086천원(군 27,017, 도 12,158, 군 28,368, 자부담 67,543) ▶ 52,543천원 증 ○ [사업내용] 친환경 농자재 및 녹비종자 지원 ○ [증감사항] - 사업량 증가(32ha → 143ha) - 30,000,000원×50% → 135,086,000원×50%
검토의견	☞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u>사업량이 32ha에서 143ha로 약 4.5배 증가하면서 사업비도 52,543천원 증액된 것으로, 사업비가 무려 350%가 증액되었는데, 사업량 확대의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실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u>

	☞ 또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자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 농가의 친환경 인증 유지 여부와 자재 사용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u>사업량 증가에 대한 농가 수요 및 사업대상 확정 여부, ha당 지원단가와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u> ※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7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친환경농자재, 시설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

사 업 명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p336, p228)
내 용	○ [사업목적]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실천을 통해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 [사 업 비] 37,400천원(도 11,220, 군 26,180) ▶ 순증 ○ [사업내용] 친환경 농산물(35개 도 전략품목) 생산 장려금 지원 ↳ 지급단가 : 무농약 240원/m², 유기 350원/m² ○ [증감사항] 도비 사업선정(31농가 / 129,010m²)에 따른 사업비 편성
검토의견	☞ <u>31농가의 친환경 농산물 품목은 무엇이며, 무농약과 유기 인증 물량은 각각 얼마인지?</u>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사업으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무농약·유기농 재배에 따른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지원 이후 친환경 인증 유지 여부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등 사업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사 업 명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조성 사업(p337, p231)
내 용	○ [사업목적] 경남 지역특화형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 [사 업 비] 7,829천원(도비 2,349, 군비 2,740, 자부담 2,740) ▶ 순증 ○ [사업내용] 하우스 내 점적관수시설 설치 ○ [증감사항]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7,829,000원×65%)
검토의견	☞ 경남 지역특화형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점적관수시설 설치를 통해 농업용수 절감 및 적정 관수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하우스 내 점적관수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u>실제 사업대상 농가수와 품목 및 재배면적은 어떻게 되는지</u> 설명을 요함.

사 업 명	벤처농업 경영체 시제품 개발 시범사업(p338, p235)
내 용	○ [사업목적] 농식품 산업의 다양한 제품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화 기초 역량 지원 ○ [사 업 비] 22,800천원(도 4,560 군 13,680 자부담 4,560) ▶ 순증 ○ [사업내용]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 [증감사항] 2026년 벤처농업 육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교부에 따른 군비 편성 요구
검토의견	☞ <u>시제품 제작이라 함은 어떤 제품을 말하는지</u> 구체적 설명을 요함. ☞ 본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농식품 관련 사업자의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제품개발 및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신규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이 실제 제품 출시와 매출 증대 등 농가 및 사업자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조금 지원 이후 사업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자부담 20%의 적정한 부담을 통해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며, 향후 사업성과 및 사업화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농업소득과

<세출예산>(예산서 P341)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48,043,982	46,381,140	1,662,842	3.59

○ 농업소득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6,284만 2천원이 증액(3.59%)된 480억 4,398만 2천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 ⇒ △40,000천원
- 천원의 아침밥(산단근로자) ⇒ 12,320천원 증
-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 200,000천원 증
-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과수) ⇒ 30,000천원 증
- 이상기후 대응 포도농자재 지원 ⇒ 37,750천원 순증
-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 630,000천원 순증
- 애플망고 스마트 재배단지 조성 ⇒ 498,727천원 순증
- 시설 딸기 수정벌 지원 ⇒ 63,000천원 순증
- 채소 가격 안정 지원 ⇒ △198,079천원 전액삭감
- 광역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 120,000천원 순증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송서비스 차량구입 ⇒ 193,000천원 순증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p342, p243)
내 용	○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농업인 경영안정화 ○ [사 업 비] 5,600,000천원(도 1,400,000, 군 4,200,000) ▶ 200,000천원 증 ○ [사업내용] 사과 등 49개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증감사항] 도비 매칭 비율 충족을 위한 군비 추가 확보
검토의견	☞ 도비 14억원에 군비 42억원을 부담하는 구조로 군비 부담률이 75%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이 상당함. ☞ <u>장기간 보험료 지원액은 크게 증가하는데 실제 보험금 수령 농가 금액이 매우 적고, 가입률이나 보장효과도 낮다면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u> ☞ <u>최근 3년간 군비로 투입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액은 얼마이고, 이에 따라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몇 농가이며 보험금 지급액은 얼마인지?</u> ☞ 또한, 군비 지원액 대비 보험금 지급액만이 아니라 가입률, 재해 발생률, 품목별 손해율 등을 분석하여 <u>2026년 42억원의 군비 투입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u> 설명을 요함. ☞ 도비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군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성과를 근거로 예산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임.

사 업 명	농산물 품질 고급화 사업(p342, p245)
내 용	○ [사업목적] 기후변화 대비 과수 품질 향상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 ○ [사 업 비] 280,500천원(도 39,375, 군 100,875 자부담 140,250) ▶ 37,750천원 증 ○ [사업내용] 고품질 과실생산 자재 및 장비 지원 ○ [증감사항] 이상기후 대응 포도 농자재 지원 신규사업 편성 ↳ 500,000원×150ha×5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포도 등 과수 재배농가에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및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금회 이상기후 대응 포도 농자재 지원을 위해 500천원/ha × 150ha × 50%의 기준으로 총 37,750천원을 편성한 것으로, 최근 폭염.가뭄 등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수 농가의 생산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u>ha당 500천원의 지원단가와 50% 보조율의 산정 근거</u>는 무엇인지? <u>실제 농가의 농자재 구입비 및 피해 정도를 반영한 적정 수준인지</u> 설명이 필요하며, <u>지원대상 150ha의 선정 기준과 물량 산정 근거</u>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사 업 명	지역특화품목육성단지 조성[미래형 과원] (p342, p246)
내 용	○ [사업목적] 미래형 사과원체계 본격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견인 ○ [사 업 비] 1,260,000천원(도 189,000, 군 441,000 자부담 630,000) ▶<u>순증</u> ○ [사업내용] 거창 미래형 다축 사과원 육성 단지 조성(10ha) ○ [증감사항] 공모사업 선정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미래형 사과원 체계인 다축 재배방식을 도입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 편성된 사업임. ☞ 다축 사과원은 기존 사과 재배방식에 비해 작업 효율성 및 기계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u>총사업비 12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10ha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몇 농가를 선정하는지 등 대상자 선정기준</u>에 대해 설명을 요함. ☞ 또한, 다축 재배방식의 지역 적합성 및 실제 생산성 향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며, 참여 농가의 자부담 6억 3천만원에 대한 부담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특히 신규 도입 방식인 만큼 초기 조성 이후에도 재배기술 교육, 현장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지역특화품목육성단지 조성[아열대 작목] (p342, p247)
내 용	○ [사업목적] 기존 과수 중심 농업구조 탈피 및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목 시범 도입 ○ [사 업 비] 860,600천원(도 213,740 군 284,987 자부담 361,873) ▶<u>순증</u> ○ [사업내용] 애플망고 시설하우스 설치(6,650m²) ○ [증감사항] 공모사업 선정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과수 중심의 농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애플망고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도입하는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u>애플망고가 우리 지역의 기후·토양 여건에 적합한 품종임이 검증되었는지, 재배기술 확보는 되어 있는지,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u> 설명을 요함. ☞ 아열대 작목은 국내 소비시장 및 출하 시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생산·유통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 업 명	거점 APC 운영 지원 (p344, p251)
내 용	○ [사업목적]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한 기능 수행 ○ [사 업 비] 161,000천원(군 161,000천원) ▶<u>126,000천원 증</u> ○ [사업내용] - 서북부경남 거점APC 스마트경영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광역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증감사항] 신규 편성
검토의견	☞ 농식품부는 APC를 단순 저장시설이 아니라 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를 담당하는 산지유통의 핵심시설로 보고 있으며, 최근 정책방향도 신규 시설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기존 APC 간 기능 연계와 역할 분담, 통합·광역화를 통해 규모화하는 방향임. ☞ 우리군도 이미 거점 APC의 시설보완을 추진하면서 고속선별기, 저온저장고, ERP 등을 도입하여 사과 20,000톤 이상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남거창농협 APC, 북부농협 APC 등 추가 산지유통시설도 있는데, <u>새로운 복합물류센터가 기존 APC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요함.</u> ☞ <u>현재 거점 APC의 시설능력 대비 실제 취급물량은 몇 %이며, 최근 3년간 운영수지는 어떠한지, 기존 APC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복합물류센터를 추가로 건립해야 하는 구체적인 물량과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u> ☞ <u>기존 시설의 운영성과와 물류수요에 대한 검증 없이 새로운 대규모 시설 건립을 전제로 기본계획부터 수립하는 것보다 타당성 검증 용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u>
--	--

사 업 명	우수농산물 해외 수출 활성화 지원(자산취득) (p344, p255)
내 용	○ [사업목적] 수출농산물 품질 균일화를 통한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 [사 업 비] 32,540천원(군 32,540천원) ▶ 12,540천원 증 ○ [사업내용] 포도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포도선별기 추가 구매 ↳ 4,180천원×3대 ○ [증감사항] 포도 중량 선별기 구매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수출용 포도의 품질 균일화와 상품성 제고를 위해 중량 선별기를 추가 구입하는 사업으로, 수출농산물의 규격화 및 선별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중량 선별기 3대 추가 구입으로 12,540천원이 증액되는 만큼 <u>기존 선별기의 가동률 및 처리능력, 수출 포도 물량 증가 추이, 신규 장비 도입에 따른 선별능력 향상 효과</u> 등에 대한 설명을 요함. ☞ 특히 장비 구입 후 활용도가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수출농가 및 수출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장비와의 중복 여부 및 향후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하여 효율적인 장비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임대농기계 및 순회교육 지원 (p345, p256)
내 용	○ [사업목적] 임대 농기계를 현장까지 운송 및 회수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편의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 [사업비] 223,000천원(군223,000) ▶<u>순증</u> ○ [사업내용] 농기계 운송차량 구입, 기간제(기술직) 인력 2명 총원 ○ [증감사항]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신규 편성
검토의견	☞ 농업인의 편의를 높인다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u>한 번 차량과 인력을 확보하면 매년 고정적인 운영비가 발생하는 사업임.</u> ☞ 농기계 임대 이용자 중 <u>실제 배달서비스 수요</u>가 어느 정도인지? ☞ <u>“수요조사 → 시범운영 → 운송실적 및 원가분석 → 본격 시행”</u>의 단계적 추진은 어떠한지? ☞ 만약, 주 이용자가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이라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는 않은지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

□ 행복농촌과

<세출예산>(예산서 P349)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26,551,603	27,550,323	△998,720	△3.63

○ 행복농촌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782만 원이 감액(△3.63%)된 265억 5,160만 3천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 △1,000,000천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위케이션) 지원사업 ⇒ 34,780천원 **순증[성립전]**
- 거창 별바람언덕 화초류 구입 ⇒ △50,000천원
- 감악산 꽃별여행 행사장 및 주차장 정비 장비임차 ⇒ 20,000천원 **증**
- 감악산 꽃별여행 셔틀버스 용역 ⇒ 30,000천원 **증**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p350, p263)
내 용	○ [사업목적] 농촌공간 회복.생태환경 보전사업을 농촌협약과 연계 하여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농촌공간 체계 확립 ○ [사 업 비] 6,468,000천원(국4,600,000, 도1,380,000, 군468,000) ▶ <u>1,000,000천원 감</u> ○ [사업내용] 폐축사 철거 및 동산마을 환경개선 1식 ○ [증감사항] 집행계획 조정에 따른 군비 매칭분(1,000,000천원) 차년도 편성
검토의견	☞ <u>집행 계획 조정 사유</u>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함. ☞ 금번 감액은 사업 취소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이 아닌 집행계획 조정에 따른 차년도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차년도에

	군비 부담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과 사업 추진일정을 구체화하여 국·도비 반환 또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사 업 명	[성립전]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위케이션) 지원사업 (p351, p267)
내 용	○ [사업목적]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용한 위케이션 운영으로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비] 34,780천원(도 13,912, 군 20,868) ▶<u>순증</u> ○ [사업내용] 위케이션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8,695,000×4개소) ○ [증감사항] 신규 편성
검토의견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유희시설과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케이션을 운영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체류를 유도하고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규 편성사업으로 위케이션 참여수요 및 사업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u>4개 마을에 동일한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만큼, 마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과 참가자 유치 계획, 숙박·체험·지역상권 연계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u> ☞ 또한, 단순 체험·숙박 중심의 일회성 사업으로 운영될 경우 지속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자 수, 체류일수, 지역 내 소비액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 종료 후 실적을 평가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위케이션 참가자 확보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이 실질적인 참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 재방문 유도 등 구체적인 유치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도사업소

<세출예산>(예산서 P355)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32,681,033	33,413,759	△732,726	△2.19

○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272만 6천 원이 감액(2.19%)된 326억 8,103만 3천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웅양면 용전마을 마을상수도 정비공사 ⇒ 70,000천원 순증
- 마리면 상율마을 급수관로 정비공사 ⇒ 290,000천원 순증
- 거창지구 시가지 우수관로 준설공사 ⇒ 100,000천원 순증[성립전]
-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 △100,000천원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 102,900천원 증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 △31,925천원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국도비 전출금 ⇒ △1,157,000천원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웅양면 용전마을 마을상수도 정비공사 (p355, p273)
내 용	○ [사업목적] 상수원 부족 및 노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식수 공급 ○ [사업비] 70,000천원(군 70,000) ▶ 70,000천원 증 ○ [사업내용] 지하수개발 1식, 관로정비 L=150m ○ [증감사항] 원수 부족 지역 지하수 개발 등
검토의견	☞ 노후·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고 지하수를 추가 개발하여 농촌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u>총사업비 70,000천원을 투입하여 지하수 개발 1식 및 관로 150m를 정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대상지의 기존 수원 고갈 및 수량 부족 여부, 지하수 개발 가능성, 수질 적합성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함.</u> ☞ 특히, 지하수 개발 이후에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한지와 가뭄 등 갈수기에 수량 확보가 가능한지, 개발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정기적인 수질관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관로정비 L=150m의 경우 노후관 교체에 따른 누수 감소 및 급수 안정성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단순 시설개량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업대상지의 급수불량 실태, 기존 시설의 노후도, 지하수 개발 타당성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 완료 후 안정적인 급수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

사 업 명	마리면 상울마을 급수관로 정비공사 (p355, p274)
내 용	○ [사업목적] 노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식수 공급 ○ [사 업 비] 290,000천원(균 290,000) ▶순증 ○ [사업내용] 배·급수관로 L=1.2km, 배수지 증설 50ton ○ [증감사항] 신규 편성
검토의견	☞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배·급수관로 1.2km 및 배수지 50톤 증설은 급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다만, <u>신규 사업인 만큼 사업대상지의 급수인구 및 물 사용량, 기존 배수지의 용량 부족 원인, 관로 노후도 및 누수 여부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u>

	☞ 특히 <u>배수지 증설 규모가 50톤</u>으로 계획된 만큼 현재 및 장래 급수량을 기준으로 적정 용량을 산정하였는지, 관로 정비와 배수지 증설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소규모 수도시설은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인 만큼, 사업 완료 후 시설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비용, 수질관리 및 정기점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사 업 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p356, p278)
내 용	○ [사업목적] 상수도 지방공기업 안정적 운영 ○ [사 업 비] 4,573,003천원(군 4,573,003) ▶ <u>102,900천원 증</u> ○ [사업내용]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자본 전출 ○ [증감사항] - 수익적사업 소요예산 감소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 315,000천원 - 자본적사업 소요예산 증가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 417,900천원
검토의견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상수도 지방공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회 예산은 4,573,00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900천원 증액 편성됨. ☞ 주요 증액 사유는 자본적사업 소요 증가에 따른 전출금 증액이며, 특히,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자본적 지출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정수장 시설 개선 및 예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u>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일반회계 전입으로 지속적으로 보전할 경우 상수도사업의 자체 재정자립도와 요금 현실화 수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u> ☞ 상수도는 군민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출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년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재정구조가 고착되지 않도록 특별회계의 자체재원 확보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p356, p279)
내 용	○ [사업목적] 하수도 지방공기업 안정적 운영 ○ [사 업 비] 6,730,874천원(군 6,730,874) ▶ 31,925천원 감 ○ [사업내용]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자본 전출 ○ [증감사항] - 수익적사업 소요예산 감소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 70,000천원 - 자본적사업 소요예산 증가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 101,925천원
검토의견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등 자체수입만으로는 시설 유지·관리 및 각종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일반회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안정적인 하수도 운영을 위해 전출금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금회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 감소로 전체 전출금이 감액된 만큼, <u>자체수입 감소 원인과 세입 추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u> ☞ 특히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반복적으로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지 않도록 <u>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체납관리 및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u> ☞ 또한 전출금 증액분이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증가에 따른 것인지, 시설개선 등 필수사업 추진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하여 지원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출금은 하수도공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편성하되, 자체재원 확충 및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공기업 특별회계

[단위:천 원]

구 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36,071,218	37,533,999	△1,462,781	-3.90
상수도사업	14,653,637	15,628,637	△975,000	-6.24
하수도사업	21,417,581	21,905,362	△487,781	-2.23

■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별책 p11)

(단위:천원)

과 목		수 입			지 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
계		14,653,637	15,628,637	△975,000	14,653,637	15,628,637	△975,000
사업 예산	영업수익	5,366,213	5,366,213				
	영업외수익	805,658	1,120,658	△315,000			
	상수도사업				3,665,297	3,825,297	△160,000
	행정운영활동				2,506,574	2,606,574	△100,000
	예비비					55,000	△55,000
자본 예산	자본잉여금 수입	8,225,009	7,807,109	417,900			
	유 보 자 금	256,757	1,334,657	△1,077,900			
	맑은물 공급				7,833,000	8,333,000	△500,000
	취정수시설 설치 및 정비				418,766	458,766	△40,000
	재무활동				230,000	230,000	
	예비비					120,000	△120,000

○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7,500만 원이 감액(△6.24%)된 146억 5,363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예산 중 수입은 영업외 수익에서 315,000천원 감액되었고, 지출은 상수도사업에서 160,000천원 감액, 행정운영활동 100,000천원 감액, 예비비에서 55,000원 감액되었음.

○ 자본예산 중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417,900천원 증액, 유보자금 1,077,900천원 감액되었으며, 지출은 맑은물 공급 500,000천원 감액, 취수정수시설 설치 및 정비 40,000천원 감액, 예비비 120,000천원 감액되었음.

▶ 사업예산 분야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사업별 구분	증 감	사 유
합 계	△975,000	
○ 영업외 수익	△315,000	
-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50,000	청원경찰 인건비 불용액
- 상수도 정수처리 응집제 구입	△40,000	강수량 저하로 약품 투입 감소
- 청정 달강수 생산시설 유지관리 및 수선	△10,000	25년 달강수 생산시설 개선사업 시행으로 수선 건수 감소
- 지방상수도 수질관리 및 기술진단용역	△60,000	계약 잔액
- 인건비	△100,000	관리담당, 상수도담당, 정수장담당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
- 예비비(수익적)	△55,000	불용액

☞ 검토의견

- 인건비 100백만원, 용역비 60백만원, 예비비 55백만원 등에서 상당부분 감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집행잔액으로 보기보다는 당초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자본예산 분야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사업별 구분	증 감	사 유
○ 자본잉여금 수입	417,900	
- 일반회계 전입금	1,077,900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군비 증액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100,000	유지관리비 감소
-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	△200,000	유지관리비 감소
- 지방마을 상수도 중복관리 지역 정비	△200,000	실시설계 결과 반영
- 거창정수장 발생 설비 교체	△40,000	집행잔액
- 예비비(자본적)	△120,000	
○ 유보자금	△1,077,900	
- 순세계 잉여금	△1,077,900	202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결산 결과 반영

☞ 검토의견

- 자본잉여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와 자본적 지출 감액을 반영하여 417,900천원 증액하고, 유보자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077,900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산 결과에 따른 재원 조정으로 판단됨.
- 다만,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

하는 만큼 상수도사업의 자체재원 확보 및 요금수입 구조를
점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
정적 의존도 심화로 이어지지 않는지 점검해보아야 함.

- 또한, 노후관 개량 등 주요 자본사업의 감액이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것인지 단순 집행잔액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여 향후 시설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함.

■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별책 p57)

(단위: 천원)

과 목		수 입			지 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
계		21,417,581	21,905,362	△487,781	21,417,581	21,905,362	△487,781
사업 예산	영업수익	1,320,928	1,320,928				
	영업외수익	10,014,434	9,944,434	70,000			
	하수도사업				10,800,550	10,700,550	100,000
	행정운영활동				434,812	464,812	△30,000
	재무활동				10,000	10,000	
	예비비				90,000	90,000	
자본 예산	자본잉여금 수입	7,687,275	6,769,000	918,275			
	유 보 자 금	952,060	2,460,041	△1,507,981			
	기타자본적 수입	1,442,884	1,410,959	31,925			
	하수처리 시설확충				7,480,219	8,238,000	△757,781
	노후하수처리 시설관리				1,902,000	1,902,000	
	영업외활동				600,000	400,000	200,000
	예비비				100,000	100,000	

○ 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8,778만 1천원이 감액(△2.23%)
된 214억 1,758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예산 중 수입은 영업외 수익에서 70,000천원 증액되었고,
지출은 하수도사업에서 100,000천원 증액, 행정운영활동
30,000천원 감액, 예비비에서 55,000원 감액되었음.

- 자본예산 중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918,275천원 증액, 유보자금 1,507,981천원 감액되었으며, 기타자본적수입 31,925천원 증액, 지출은 하수처리 시설확충 757,781천원 감액, 영업외활동 200,000천원 증액되었음.

▶ 사업예산 분야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사업별 구분	증 감	사 유
합 계	70,000	
○ 영업외 수익	70,000	
-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100,000	5년만기 국고채 적용수익률 재산정
- 인건비	△30,000	하수도담당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

☞ 검토의견

-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는 5년 만기 국고채 적용수익률 재산정에 따라 100,000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단순 금리 상승분 인지, 협약상 어떤 공식으로 산정된 것인지, 실시협약에 따른 임대료 산정의 적정성과 금리 변동에 따른 향후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하수도담당 공무원 인건비는 실제 집행액을 반영하여 30,000천원 감액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운영 현황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이 요구됨.

▶ 자본예산 분야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사업별 구분	증 감	사 유
합 계	△557,781	
○ 자본잉여금 수입	918,275	
- 국고보조금 수입	△490,000	남상 청림지구소규모하수처리시설 △500,000 거창읍 시가지 노후관로 정비 10,000
-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72,275	일반회계 전입금 △101,925 낙동강 수계관리 전입금 177,200
- 시도비보조금 수입	△667,000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282,000 마리 진산지구 등 2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0,000 거창읍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85,000
- 원인자부담금	2,000,000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 유보자금	△1,507,981	
- 순세계 잉여금	△1,507,981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 기타자본적 수입	31,925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31,925	이자 발생

☞ 검토의견

- 자본잉여금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감소 등으로 일부 재원이 감소하였으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억원 증액에 따라 전체적으로 9억1,827만5천원이 증가하였음.
- 다만, 원인자부담금 증액 규모가 큰 만큼 실제 부과 대상 및 사업 추진현황, 부과·징수 가능 시기 등을 확인하여 세입 추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등 주요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만큼, 보조금 감액 사유가 사업 규모 축소 또는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것인지, 이에 따른 사업 추진 및 군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설명을 요함.
-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15억799만원 감액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초 추계액과 결산액 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함.

□ 체육시설사업소

<세출예산>(예산서 P361)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17,174,059	16,727,834	446,225	2.67

-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622만 5천 원이 증액(2.67%)된 171억 7,405만 9천 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스포츠파크 체육 및 공원 시설 소규모 정비 ⇒ 170,000천원 증
- 야외운동기구 정비 ⇒ 60,000천원 순증
- 고제면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 6,000천원 순증
- 위천면 파크골프장 관수설비 설치 ⇒ 30,000천원 순증
- 가조면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사업 ⇒ 25,000천원 순증
- 국민체력 100 거창체력인증센터 운영 ⇒ 207,790천원 순증[성립전]
- 전국규모 엘리트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 24,630천원 증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 (p362, p287)
내 용	○ [사업목적] 스포츠파크 내 체육.공원시설의 정기적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과 조경, 편의시설 환경정비 등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 기여 ○ [사 업 비] 1,685,283천원(군 1,685,283) ▶ 165,389천원 증 ○ [사업내용] 스포츠파크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제경비 등

	○ [증감사항] - 안내홍보물 제작, 수목관리용 자재 구입 등 집행잔액 예상액 감 조정(△4,611) - 스포츠파크 안전진단 부적합 사항(건축10건, 소방 9건, 전기 50건) 정비를 위한 사업비 증액(170,000)
검토의견	☞ 스포츠파크의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사항 정비를 위해 170백만원을 증액한 것이 주요 내용임. ☞ 특히 건축 10건, 소방 9건, 전기 50건 등 다수의 안전 관련 지적 사항이 확인된 만큼, 군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체육·공원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u>안전진단에서 지적된 69건의 세부내용과 위험도, 정비 우선 순위 및 사업비 산출근거</u>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시설별 정비가 일회성 보수에 그치지 않도록 정비 후 재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반복적인 보수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별 중장기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사 업 명	체육시설 관리 (p362, p288)
내 용	○ [사업목적] 읍.면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한 시설 관리를 통한 군민 이용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 기여 ○ [사 업 비] 2,489,806천원(군 2,489,806) ▶ 116,606천원 증 ○ [사업내용] 읍.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제경비 등 ○ [증감사항] - 위생용품,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예산액 감 조정(△4,394천원) - 읍면 노후 야외운동기구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증액(60,000천원) - 고제면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증액(6,000천원) - 위천면 파크골프장 관수설비 설치 증액(30,000천원) - 가조면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증액(25,000천원)
검토의견	☞ 읍.면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 야외운동기구 교체·정비 및 파크골프장 편의시설·관수설비 확충 등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읍·면 노후 야외운동기구 교체·정비 사업은 60,000천원이 증액되는 사업인 만큼 <u>읍·면별 노후도, 이용자 수, 안전사고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u> ☞ 또한, 고제면·가조면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와 위천면 파크골프장 관수설비 설치에 시설별 이용 규모와 기존 시설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투자여야 하며, <u>고제와 가조의 편의시설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u> 설명을 요함.
--	--

사 업 명	[성립전]국민체력 100 거창체력인증센터 운영 (p364, p293)
내 용	○ [사업목적]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 기여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 ○ [사 업 비] 207,790천원(기 103,895천원 군 103,895천원) ▶순증 ○ [사업내용] 체력측정(무료)을 통한 맞춤형 운동처방 ○ [증감사항] 국민체력 100 공모사업 선정
검토의견	☞ 국민체력100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체력측정과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군민 건강증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특히 국·기금 50%의 재원을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다만, 무료 체력측정 이후 실제 운동 참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참여자의 연령·성별·체력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체육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내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참여인원·재참여율·운동실천율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효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u>사업비 207,790천원의 산출내역</u>(인건비, 운영비, 장비비 등)에 대한 설명을 요함.

□ 거창골프장사업소

<세출예산>(예산서 P367)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49,249	49,250	△1	0.00

○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천 원이 감액(0.00%)된 4,924만 9천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거창 CC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 ⇒ △1천원 성립전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성립전] 거창CC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 (p367, p299)			
내 용	○ [사업목적] 호우 피해 복구로 골프장 기능복원 및 안전 도모 ○ [사 업 비] 49,249천원(국 32,833, 도 16,416) ▶1천원 감 * 총사업비: 65,665천원(국 32,833, 도 16,416, 군 16,416)			
	총계(자부담 포함)	기투자*	2026년	향후 계획
	65,665	16,416	49,249	0
	○ [사업내용] 거창CC 3번홀 법면 보수공사 및 배수로 정비 ○ [증감사항] '25.7.16.~20. 호우 피해 복구 도비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1천원 감액			

공기업 특별회계

[단위:천 원]

구 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친환경대중 골프장	3,283,441	3,045,536	237,905	7.81

■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별책 p107)

[단위:천 원]

과 목		수 입			지 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
계		3,283,441	3,045,536	237,905	3,283,441	3,045,536	237,905
사업 예산	영업수익	2,958,993	2,951,363	7,630			
	영업외수익	64,173	64,173	0			
	골프대중화기반 조성(수익적)				1,846,783	1,626,683	220,100
	행정운영활동				62,826	50,526	12,300
	예비비				32,000	0	32,000
자본 예산	유보자금	260,275	30,000	230,275			
	골프대중화기반 조성(자본)				1,341,832	1,368,327	△26,495
	예비비				0	0	0

○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3,790만 5천 원이 증액(7.81%)된 32억 8,344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예산 중 수입은 영업수익에서 7,630천원 증액되었고, 지출은 골프대중화기반조성(수익적) 220,100천원, 행정운영활동 12,300천원, 예비비 32,000천원이 증액되었음.

○ 자본예산 중 수입은 유보자금이 230,275천원 증액되었고, 지출은 골프대중화기반조성(자본)에서 26,495천원 감액되었음.

▶ 사업예산 분야 수입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사업별 구분	증 감	사 유
합 계	7,630	
○ 영업수익	7,630	
- 공유재산 사용료	7,630	골프장 고객편의시설(식당) 사용료

▶ 사업예산 분야 지출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사업별 구분	증 감	사 유
합 계	264,400	
○ 골프대중화기반조성(수익적)	264,400	
- 인건비	14,910	시설관리,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보수
- 일반운영비	20,170	클럽하우스 운영 소모품
- 공공운영비	29,000	소규모 수리수선
- 교육훈련비	1,000	고객응대 서비스 교육
- 공공요금 및 제세	7,000	골프장 전기료
- 연구용역비	22,000	거창CC 이용요금 현실화 용역
- 인건비	96,020	코스관리, 경기진행 기간제근로자보수
- 일반운영비	15,000	코스관리 및 경기운영 소모품, 유류비
- 재료비	5,000	총 · 균 방제, 비료, 퇴비
- 수선유지비	10,000	코스관리 장비 유지보수, 자재구매
- 기본경비	12,300	사무용품 구입 등
- 예비비	32,000	

▶ 자본예산 분야 수입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사업별 구분	증 감	사 유
합 계	230,275	
○ 유보자금	230,275	
- 순세계잉여금	230,275	

▶ 자본예산 분야 지출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사업별 구분	증 감	사 유
합 계	△26,495	
○ 골프대중화기반조성(자본)	△26,495	
- 시설비	△36,605	병커 배수 개선 및 모래 교체
- 자산취득비	10,110	승용카트 배터리 교체

☞ 검토의견

- 이번 추경에서 약 220백만원을 골프장 수익적 경비로 증액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약 111백만원으로 증액액의 50%를 차지함. 추가 인력의 채용인원과 근무기간, 당초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함.
- 또한, 22백만원을 투입해 거창CC 이용요금 현실화 용역을 추진하는데, 현재 이용요금이 원가 대비 어느 수준인지, 요금 현실화에 따른 예상 수입 증가액과 이용객 감소 가능성까지 분석할 계획인지 설명을 요함.
- 별도로 예비비 32백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용목적은 무엇인지?

□ 거창사건사업소

<세출예산>(예산서 P371)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1,467,111	1,478,762	△11,651	△0.79

○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65만 1천원이 감액(△0.79%)된 14억 6,711만 1천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 △9,930천원
- 추모공원 관리운영 시설부대비 ⇒ △1,000천원
- 거창사건업무 추진 여비 ⇒ △721천원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p371, p303)
내 용	○ [사업목적]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일상생활 안정에 기여 ○ [사 업 비] 150,070천원(군 150,070) ▶<u>9,930천원 감</u> ○ [사업내용] 거창군에 거주중인 모든 유족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증감사항]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고령화 및 사망에 따른 보조금 예산 조정